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33호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2019 호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2	
○ 조 례	제 2020 호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4	
○ 조 례	제 2021 호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안 전 총 괄 과	8	
○ 조 례	제 2022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13	
○ 조 례	제 2023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체 육 진 흥 과	15	
○ 조 례	제 2024 호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토 지 정 보 과	17	
○ 조 례	제 2025 호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생 활 경 제 과	19	
○ 조 례	제 2026 호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	여 성 가 족 과	23	
○ 조 례	제 2027 호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31	
○ 조 례	제 2028 호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청 소 행 정 과	36	
○ 조 례	제 2029 호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 소 행 정 과	39	
○ 조 례	제 2030 호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치 수 과	42	
○ 조 례	제 2031 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 건 행 정 과	45	
○ 조 례	제 2032 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 강 증 진 과	48	
○ 조 례	제 2033 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 강 증 진 과	50	
규 칙					
○ 규 칙	제 1127 호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 회 사 무 국	54	
○ 규 칙	제 1128 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 회 사 무 국	56	
훈 령					
○ 훈 령	제 412 호	남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총 무 과	60	
예 규					
○ 예 규	제 92 호	남동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감 사 실	102	
공 고					
○ 공 고	제 1734 호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105	
○ 공 고	제 173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1지구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정정)	도 시 재 생 과	232	
고 시					
○ 고 시	제 116 호	도시관리계획(소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 시 재 생 과	238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19호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39조”를 “영 제41조”로 한다.

제30조제7항 중 “영 제43조제6항”을 “영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4조제3항”을 “영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간 회의 일수 및 회기 (안 제2조)
-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안 제21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안 제30조제7항)
- 증인의 비용 지급 (안 제4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0호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를 “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되”로,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를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으로,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구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2항 중 “민간위탁”을 “위탁사무 소관부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설치주체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강화(안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11조)
- 계약 체결시 공증의무 조항 삭제(안 제12조)
- 수탁기관 예산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 수탁기관 의무조항 신설(안 제14조)
- 수탁기관 성과평가 완료기간 단축(안 제20조)
- 수탁기관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항 신설(안 제2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1호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남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표창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제11조에 따른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사업주의 협조(안 제4조, 제6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제8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9조)
-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안 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2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31조를 제33조로 하며, 제32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5조로 하며,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6조를 제38조로 하며, 제37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제39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0조를 제42조로 하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운영한다.

제28조(전형방법)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0조)제3항 중 “제27조, 제28조”를 “제29조, 제30조”로 한다.

제3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제42조(종전의 제40조)제2항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립예술단의 단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단원 위촉 시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제28조)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3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를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운영 및 사용료”를 “운영 및 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일정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참가시”를 “참가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이모아카드”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혜택을 주는 카드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지방공기업법」”을 “관리·운영을「지방공기업법」”으로, “에 위탁”을 “에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정은「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를 “선정은「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을 “소지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다자녀 기준(3자녀→ 2자녀) 변경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을 수정·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수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이모아카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격 변경(안 제10조제4항)
- 그 밖의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4호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회 회의의 비공표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14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공표 규정 삭제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제3항제2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5호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남동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안 제5조)
-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6조)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6호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조직된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활동비 등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육성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
2.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지도자
4. 청소년단체의 장
5.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육성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남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③ 지도위원은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제18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제3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사람
3. 지도위원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도위원증 교부) 구청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작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등의 사항(제20조 관련)

(앞면)	(단위:cm)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사 진 ⑤ ② ③ ④ ○ ○ 동	0.3 1 4 0.75 0.75 1 0.3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 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⑥ 남동구청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5×8.1	4.9×8.1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 (3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 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 철인)
 -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였음
- 이에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남동구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안 제6조, 제7조)
- 청소년 교류활동·문화활동·동아리활동 지원(안 제8조 ~ 제10조)
-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1조 ~ 제13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2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7호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지역 주민 대표
3. 청소년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안 제2조)
- 기능 (안 제3조)
- 조직 및 구성 (안 제4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안 제6조)
- 지도·점검 (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8호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행사
3. 쓰레기 담으며 걷기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및 단체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이 속한 주간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으로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남동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 장려와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지정(안 제6조)
-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29호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납부금액의 납부방법)”을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5조 중 “영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으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치납부금액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제8조 중 “월하여”를 “이월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 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정비 및 오타 수정 : (안 제2조, 제5조의2, 제8조)
-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 내용 정비 : (안 제4조)
-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 현행화 : (안 제4조, 제5조, 제7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안 제5조의2)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범위 수정 : (안 제6조,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30호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단독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 라.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수해 예방 노력) 남동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사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사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사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사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동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 대상의 적용범위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실태조사 및 홍보사항 : (안 제7조 ~ 안 제8조)
-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31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때에는[별표]”을 “때에는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영업의 양도, 상속,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구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 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조항 추가 : (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 추가 : (안 제3조, 별표)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32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말한다)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제6조제1항 전단 중 “안내표지판을”을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터, 제4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삭제 (안 제4조제1항)
 - 어린이놀이터
-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 (안 제4조제1항)
 - 의료기관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2033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1일(4시간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하며,”를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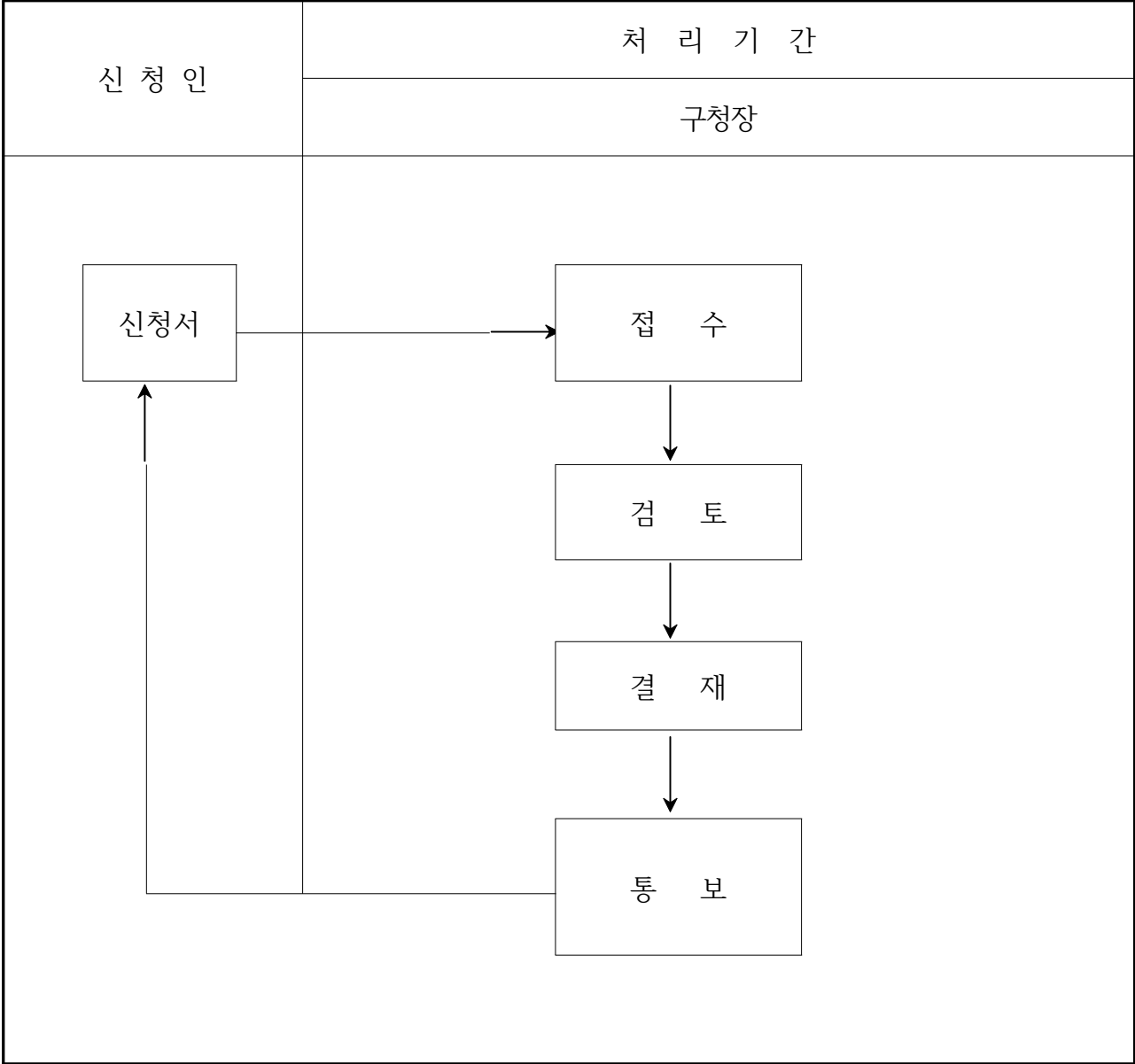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 변경 (안 제7조제1항)
 - 1일(4시간)당 주간 4만원, 야간 6만원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신설 (안 제9조)
-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성별란 추가 (안 별지제1호)

규 칙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4.)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오 용 환

2023년 9월 27일

남동구의회 규칙 제 1127호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정비(안 제1조)

규 칙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4.)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오 용 환

2023년 9월 27일

남동구의회 규칙 제 1128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경우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로 한다.

“제11조2”를 “제11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 시행(2022. 1. 1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기명투표 표결 사항 정비(안 제41조제2항)
- 이탈자 정비(제11조의2)

훈 령

남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훈령 제412호

남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동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속기관”이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남동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8. “사용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실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9. “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 채용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담당하는 “사용부서”를 말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이란,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동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기구

제4조(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 포함)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직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 공무직담당 공무원
2. 채용 또는 조직인력운영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으로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외부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4조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및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준고령자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

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제한경쟁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직급별 응시자격은 채용계획 수립시 기준을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⑦ 채용권자는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의 필기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기관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청사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담당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경우는 관리부서에 채용 의뢰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외의 경우는 사용부서에서 자체 채용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환경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채용한다.

제13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매 회계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정기 사전심사 일정에 따라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직종, 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위원회에 채용사유의 적정성,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채용절차의 공정성 순으로 심사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부서는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해당연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의 예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1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휴직 등 결원 발생에 의해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는 경우
3. 일자리 지원 및 전문 인력의 사회적 활용 등을 위한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5조(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 ① 사용부서는 제13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 승인(제14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하여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재채용될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7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4.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채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의

퇴직 등으로 후순위자를 채용하는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7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합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남동구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9조(원서접수) ①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응시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응시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20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1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12조의 채용계획 수립 시 세부기준을 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6호서식을 받고,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그 밖의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예시)

남동구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1. 채용 배경

- 결원이 발생한 분야(사무원·시설관리·운전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 공백 최소화
- 공개경쟁채용·제한경쟁채용으로 직무능력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저소득층) 병행

2. 관련 규정

- 남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남동구 훈령 제000호)
-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남동구 훈령 제000호)

3. 채용 개요

☐ 채용 분야·방법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지)	선발예정 인원	채용 사유	채용방법	비고
공무직 (사무원)	○○과 (◇◇동)	1	퇴직(00.00.00.) 결원 충원	공개경쟁채용	변경 공고*
기간제 (시설관리)	●●소 (◆◆동)	1	육아휴직(00.00.00~00.00.00.) 대체 인력 충원	제한경쟁채용 (자격증·경력)	
기간제 (운전원)	◎◎팀 (□□리)	1	질병휴직(00.00.00~00.00.00.) 대체 인력 충원	제한경쟁채용 (사회형평·장애)	9개월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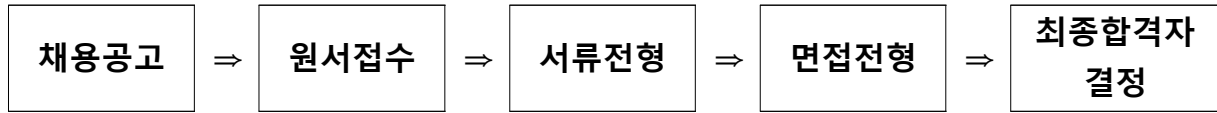
* (예시) 최초 공고(00.00.00. 공고)·재공고(00.00.00. 공고) 시 제한경쟁채용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미달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 변경 공고 결정(00.00.00. 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 채용 분야 근로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사무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금 기재
기간제 (시설관리)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기간제 (운전원)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4. 채용 절차 및 추진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만 실시하는 채용 시(필기시험 등 별도전형 추가 시 반영 필요)



- 채용공고: '00.00.00.(O) ~ '00.00.00.(O) * 공고기간 (10일이상) 준수
 - ※ 00구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공고
- 원서접수 : '00.00.00.(O) ~ 00.00.00.(O) * 최소 3일 이상 접수 기간 설정
 - ※ 우편접수(주소 명기), 전자우편 접수(000@korea.kr) * 둘 이상의 방법으로 접수
- 서류전형 : '00.00.00.(O) ~ '00.00.00.(O)
 - ※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원서접수 완료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0.00.00.(O)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00.00.00.(O)
 - ※ 면접전형 심사위원 구성(안)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진행 및 별도 보고 예정
- 최종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00.00.00.(O)~00.00.00.(O)
 - ※ 응시자격·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00.00.00.(O)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등 홈페이지 게시
- 채용 예정자 관련 서류 접수 : '00.00.00.(O) ~ '00.00.00.(O)
 - ※ 채용 예정자 신원조사(조회), 결격사유, 경력조회, 취업제한 여부 등
- 채용 예정일 : '00.00.00.(O)
 -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00세 이상인 자로(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25조(채용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 >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사무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기간제 (시설관리)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간제 (운전원)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인 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제23조제1항 <채용시험 가점기준> 반영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기타 가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에 따른 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이내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등에 따른 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이내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 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6. 시험방법

채용 분야	서류전형(선발 배수)			
공무직 (사무원)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계	평가점수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가점 (사회형평)
	100점 + 가점	50	35	15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기간제 (시설관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기간제 (운전원)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채용분야별 시험방법이 상이할 경우 상단의 표와 같이 구분 필요(동일한 경우 해당없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소극적 서류전형(적격여부만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정량·정성평가) 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공무직(사무원)의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임에 따라 10배수(10명)으로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예정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7. 심사위원 위촉

채용분야	서류전형	면접전형	비고
공무직 (사무원)	3인(내부 2인·외부 1인)	4인(내부 2인·외부 2인)	-
기간제 (시설관리) *9개월 이상 근무	2인(내부 2인)	3인(내부 2인·외부 1인)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기간제 (운전원) *9개월 미만 근무	2인(내부 2인)	3인(내부 3인)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

→ 표준기준 제17조(심사위원 선정 등)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 구성 비율(1/3 이상) 준수

- 기간제(시설관리·운전원)은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에 따른 서류전형 내부위원 구성
- 기간제(운전원)은 계약기간 6개월 이하에 따른 채용으로, 면접전형 모두 내부위원 구성
- 구체적인 전형위원 구성(안) 별도 보고 예정
 - 서류전형 : 원서접수 완료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심사위원 확정 예정
 - ※ 지원자 중 내부 직원이 있을 경우,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노력 실시(예시 :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 구성 전 제척 대상 여부 검토 및 전형일 당시 심사위원 회피의무 안내 및 서약서 징구·사전교육 실시를 통한 채용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회피·기피 상황 발생 시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
 - (나머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 부여
 -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는 심사위원이 다시 평가에 참여
 - (나머지 심사위원이 1명 이하인 경우) 사전에 예비 심사위원을 확보하고,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예비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
 - ※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 당초 심사위원이 평가 실시(단, 회피(기피) 해당 응시자가 최초 응시자일 경우 예비 심사위원이 계속 평가 시행 가능)

8.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공무직 (사무원)	1명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기간제 (시설관리)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기간제 (운전원)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예비합격자 배수 확대* 계약기간 6개월 이하

* (예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잦은 임용포기·퇴직으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3배수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붙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전형별 심사기준표 및 시험 채점표 등 각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예시)

남동구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남동구 공고 제0000-00호

남동구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남동구청장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공무직 (사무원)	1명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OO과 (◇◇동)
2	기간제 (시설관리)	1명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소 (◆◆동)
3	기간제 (운전원)	1명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팀 (□□리)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연번 2,3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채용 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번 2, 3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00세 이상인 자(00.00.00. 이전 출생자) 공고일(00.00.00.)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0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사무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기간제 (시설관리)	- (응시자격)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간제 (운전원)	- (응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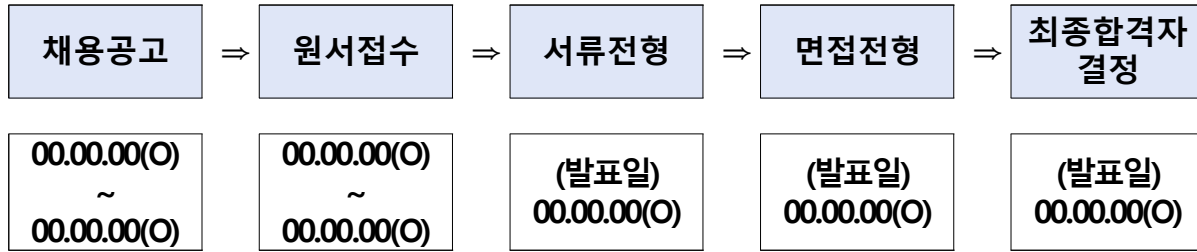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0000.00.00.예정) 기준으로 판단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기타가점	중앙정부, 남동구 정책에 따른 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이내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등에 따른 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이내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 방법

채용 분야	내용													
공무직 (사무원)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table><tr><th rowspan="2">계</th><th colspan="3">평가점수</th><th rowspan="2">가점 (사회형평)</th></tr><tr><th>지원분야 경력</th><th>자기소개서</th><th>우대사항 (자격증)</th></tr><tr><td>100점 + 가점</td><td>50</td><td>35</td><td>15</td><td>3</td></tr></table>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10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 홈페이지 공고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점 + 가점	50	35	15	3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점 + 가점	50	35	15	3										
기간제 (시설관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00.00.00(○)													
기간제 (운전원)														

○ 면접전형 방법

채용 분야	내용
공무직 (사무원)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기간제 (시설관리)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기간제 (운전원)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사무원)	1명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간제(시설관리)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간제(운전원)	1명	3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 기간제(운전원)의 경우는 근무 기간이 9개월 미만임에 따라 예비합격자 운영기한을 3개월로 단축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남동구 홈페이지, 워크넷 등
원서접수 기간	00.00.00.(O) 09:00~ 00.00.00.(O) 18:00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00.00.00.(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00.00.00.(O)	남동구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면접전형	00.00.00.(O)	
최종합격자 발표일	00.00.00.(O)	남동구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채용 예정일	00.00.00.(O)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00.00.00.(O) 09:00~ 00.00.00.(O)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편주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korea.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입사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공통	가점 대상자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로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공무직 (사무원)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기간제 (시설관리)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기간제 (운전원)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사무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과 (◇◇동)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금 기재
기간제 (시설관리)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소 (◆◆동)		
기간제 (운전원)	계약체결일 ~ 00.00.00. (0개월)	◎◎팀 (□□리)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및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규정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그 밖에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00.00.00.()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00-000-0000)에게 문의

-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

입사지원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공무직 []기간제	전형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0000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남동구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동의하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피·회피사유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신청서

- ☐ 채용부서 :
- ☐ 채용분야 :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서류심사 채점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

계약형태	공무직/기간제	직종		응시번호	
성명					
필수요건 구비여부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여 / 부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여 / 부	
구분	세부기준		배점	평가점수	
지원분야 경력 (30점)	○ 경력없음 ~ 1년 미만		10		
	○ 1년이상 ~ 2년미만		20		
	○ 2년이상		30		
지원분야 자격증 (10점)	○ 산업기사, 기능사 등		5		
	○ 기술사, 기사 등		10		
지원분야 적합성 (60점)	○ 소통·화합 능력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 추진력, 업무성취 경험 ○ 성실성·책임감 ○ 지원동기, 청에대한 이해		60		
계 (100점)					
감점	○ 블라인드 채용 위반(학력, 출신지, 성명 등 기재)		-10		
	○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 따름(세부기준)		5, 10		
합계					
특이사항	*				
채점일	20 . . .	채점자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서류심사 집계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집계표

- ☐ 근무부서 :
☐ 모집단위 :
☐ 채용인원 : 명 (응시인원 명)

응시 번호	성 명	자격요건 구비여부	채점결과		합계	평균	순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시험 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8호서식> 면접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를 무시하거나 권위적.고압적인 발언 등으로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
- 면접시간 중 화장실 출입, 휴대전화 사용, 졸음 등은 수험생 주요민원 제기 요인이므로 유의
- ※ 시험보안관계상 중식시간 등 시험실을 비우는 시간대는 일체의 면접 관련 서류를 심사위원 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람
- ※ 면접종료 후에는 모든 면접자료를 시험시행본부에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적 감 정 용	기 재 란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채 용 직 종	
		본인필적	응 시 부 서	○○○○과
성 명			수 험 번 호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평 정 점 수	평 가 등 급		
		상(10점)	중(6점)	하(2점)
가.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10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10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10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점 수 합 계				
위 원 서 명	성명	(서명)		

- ※ 유의사항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면접시험 집계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응시분야	공무직 (○○○○○)	채용예정기관	○○○○○
------	----------------	--------	-------

수험 번호	성 명	심사위원 점수						가· 감점	총계	순위
		1위원	2위원	3위원	합계	평균	합·불			

시험 위원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별지 제11호서식> 면접시험 결정서(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공무직/기간제 (○○○○○)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추가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 합격자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2				
3				
4				

20 년 월 일

○○○○○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 분		부가점수
법 정 가 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 회 형 평 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기 타 가 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에 따른 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이내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등에 따른 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이내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지 제16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예시)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지 제17호서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표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기준, 절차, 피해자 구제방법 등을 마련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근로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8조)
- 채용원칙, 절차, 채용계획 수립, 공고 등(안 제9조~제16조)
- 심사위원 선정 및 시험 전형, 합격자 결정(안 제17조~제24조)
- 채용결격사유, 공정성 관리, 합격취소 등(안 제25조~제27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구비서류, 서류 반환 등(안 제28조~제31조)
- 비공무원 채용절차 관련 주요 표준 양식(안 별지서식)

예 규

남동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9월 27일

남동구 예규 제92호

남동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남동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제4조 관련)

실·국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주요 직무 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정책기획국	미래전략과	단지, 특구, 지구 등의 지정·조성·개발·투자 유치 등	직무와 관련된 남동구 관내 부동산
재정경제국	농축수산물	농지의 관리·전용허가 등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녹지과	산림의 개발, 공원의 조성 및 토지 보상 등	
도시국	도시재생과	도시(지역)의 (재)개발·건설·계획·재생·정비 등	
	도로과	도로 등의 건설·개발·관리 등	
	치수과	소하천 개발, 관리 및 토지 보상 등	
	건축과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등	
	공동주택과	주택의 건설·(재)건축·정비·허가 등	

※ 직제규정 :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취득제한기간 : 시기는 직무시작일, 종기는 직무종료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21.10.1.) 됨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하여 기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 상기 제도가 타구에 비해 적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사혁신처 부동산 유관부서지정 기준 및 법령 재확인을 통한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을 재검토하여 추가부서를 지정하고, [별표]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 일부 변경 : [별표]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 추가 : 농축수산물, 공원녹지과, 치수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734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예 산 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여 성 가 족 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보 육 정 책 과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치매정신건강과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치매정신건강과

2023. 9. 27.
남 동 구 청 장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10.12.(목) ~ 10.20.(금)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여성가족과)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보육정책과)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치매정신건강과)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치매정신건강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7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전의 발생빈도가 낮은 보상심의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회기 중 직무”에서 “직무”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상 직무 범위 변경 : 안 제2조제1호
- 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 안 제9조
-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수정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23년)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의 경우”를 “질병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상해”를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의 경우”를 “장애”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제7조 중 “제13조제3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2항관련)

접 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청구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 - □□□			전화번호
청구내용	구분	□ 사망 □ 장애(등급) □ 상해			
	금액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남동구의회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유족 증명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의회의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제2항관련)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명		생년월일	(남,여)	
보상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등급) ☐ 상해				
사망, 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의회 심의결과		<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직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에 따른 공무원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

제3호에 따른 -----

-- 제2호에 따른 -----

--- 제3호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

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

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질병으-----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생 략)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신 설>

③ (생 략)

제11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 장애-----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제10조제2항-----
-----.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람 1명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개정으로, 소요 비용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3. 8.>

②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③ 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8.>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2. 비효율 위원회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④ (비상설화) 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 조례 개정 예시 >

< 개정 전 >	< 개정 후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위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좌 동> ④ <u>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u>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의안 번호	2838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협의회 설립 후 10년간 회원도시 확대가 저조하며 정책의 중앙 수용도 또한 낮아 활동에 따른 실익이 적으므로 회원을 탈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 규약변경 및 폐지)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3조(회원의 자격)

□ 주요내용

- 2012년 최초 협의회 구성시 가입하였으나, 최근 5년간 참석 현황 없음
-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의회 운영
 - 회원도시의 54%가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 가입대상 도시의 협의회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 낮음
 - 협의회 설립이후 10년간 4개 도시 가입
 - 전국 155개 대상 도시 중 26개 도시만 가입(16.7%)
 - 인천 자치구 중 남동구만 가입함
- 정책건의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성이 낮아, 참여 실익이 적음
 - 중앙부처 정책 제안 현황 : (2013~2022년) 수용률 16%

□ 참고자료

- 참고1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검토 보고
- 참고2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 참고3 : 관계법령

[참고자료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원 탈퇴 검토 보고

- ❖ 우리구는 2012년 최초 협의회 구성시 가입하였으나 협의회 활동 저조함
- ❖ 우리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 공유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참여를 종료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 규약변경 및 폐지)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3조(회원의 자격)

II 협의회 현황

□ 개 요

- (운영목적) 다문화도시 간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함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도모
- (구 성 일) 2012. 11. 7 ※ 협의회 구성시 가입
- (가입대상) 외국인주민 1만명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3%이상
- (회원현황)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가입지방자치단체현황(별첨) 참조
- (임 원 진) 김포시(회장), 영등포구(부회장), 광산구(부회장)
- (주요기능)
 - 전국 다문화도시 간 다문화정책 공유 및 문제해결 방안 공동 모색
 - 국내·외 다문화사업 벤치마킹 및 사업공유
 - 다문화정책 개선방안 중앙부처 건의 및 관련 시책 조사·연구
- (협의회비) 3,600,000원 (구비 100%)

☐ 우리구 활동경과

- (회원가입) 2012년 최초 협의회 구성시 가입
- (회비납부) 2012년 ~ 2014년 ※ 이후 납부 안함
- (회의참석) 최근 5년간 참석 현황 없음

Ⅲ 협의회 활동관련 검토사항

☐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의회 운영

- 회원도시의 54%가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됨
- 역대 임원도시가 경기도에 편중됨
 - 1,2대 (안산시장) / 3,4대(구로구청장) / 5대(시흥시장) / 6대(김포시장)

☐ 가입대상 도시의 협의회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 낮음

- 협의회 설립 이후 회원 추가 가입 미미 : 10년간 4개
 - 최초 참여도시 : 22개 (경기13, 서울5, 충남2, 인천1, 경남1)
 - 현재 참여도시 : 26개 (경기13, 서울6, 충남2, 인천1, 경남1, 전남1, 광주1, 전북1)
- 인천 자치구 중 남동구만 가입 함
- 전국 155개 대상 도시 중 26개 도시만 가입 → 참여율 16.7%

【남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구 현황(21)】

- 외국인주민수 : 22,139명(전국 26위, 인천시 4위)

부평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31,034	22,838	22,496	22,139	17,942	6,996	1,875	7,341	1,651	402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다문화가구원수 : 12,991명(인천시 3위)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17,224	14,031	12,991	7,341	11,154	4,439	1,548	6,366	1,382	291
미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정책건의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성 낮아, 협의회 참여 실익이 적음

- 중앙부처 정책 제안 현황 (2013년~2022년 정기회의시)
 - 18건 제안 → 수용 3건, 일부수용 1건, (수용률(16%)) 검토중 11건, 미회신 3건

- 법무부 정책 제안 현황 (2013년~2022년 외국인정책협회의의 시)
 - 36건 제안 → 수용 23건, 일부수용 4건 (수용률(75%)) 중장기검토 9건

□ 부서 의견 : 회원 탈퇴

- 협의회 설립 후 10년간 회원도시 확대가 저조하며 정책의 중앙 수용도 또한 낮음에 따라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실익은 적다고 판단됨

IV 향후계획

- 행정협의회 탈퇴의 건 의회 안건 보고 : 제289회 임시회
- 협의회 활동 종료(탈퇴) 공문 통보
- 행정협의회 탈퇴 고시 : 2023. 11월중

[참고자료2]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제 1 장 >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외국인주민 1만명 미만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 승인에 의한다.

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으로 구성하고, 장 또는 부단체장을 협의회 의원이라 한다.

제 4 조 (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 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 한다.

제 2 장 > 임원 및 운영

제 5 조 (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임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

제 3 장 > 회의 등

제 8 조 (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정기회의 : 연 2회 이하
- ②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

제 9 조 (개회 및 의결방법)

협회의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사업 등)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①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 ②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 ③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 ④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 ⑤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11 조 (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 · 구의 업무담당 실 · 과 · 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 · 과 · 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 · 과 · 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 한다.

제 4 장 > 재정

제 13 조 (회비 및 분담금 등)

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

② 일반회비는 연 360만원으로 하며 회장단체에 납부하고,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 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14 조 (회계관리)

①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

②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별도규정)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조 (협의회 최초 구성시 가입한 회원)

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 최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성동구 · 서대문구 · 강서구 · 구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평택시 · 안산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시흥시 · 용인시 · 김포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 아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이다.

제 5 조 (회비특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창립년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참고자료3]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39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4년 상반기 위탁종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3개소)
- 위탁시설

(2023. 8.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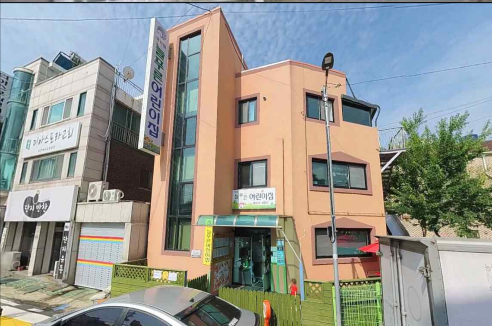
어린이집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현원)	설치(개원)일	위탁기간 (예정)
서창뜰	서창남순환로 190-15, 708동 102호 (서창2동, 서창퍼스트뷰)	84.55㎡ (지상1층)	20 (8)	2014.2.7.	2024.2.7. ~2029.2.28.
늘푸른	장승남로69번길 27 (만수6동)	272.78㎡ (지상3층)	35 (28)	2006.3.1.	2024.3.1. ~2029.2.28.
만월	만수서로 97-7 (만수2동)	497.75㎡ (지상2층,지 하1층)	98 (89)	1996.3.5.	2024.3.1. ~2029.2.28.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8,456,014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서창뜰		
늘푸른		
만월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발췌)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3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3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 ~ 2028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지원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발생비용 : 8,456,014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7,402,071천원, 구비 1,053,943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 미 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418,277	1,452,457	1,487,662	1,523,923	1,519,752	7,402,071
국시비보조금		1,418,277	1,452,457	1,487,662	1,523,923	1,519,752	7,402,071
세 출		1,614,260	1,651,596	1,690,049	1,729,657	1,770,452	8,456,0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1,614,260	1,651,596	1,690,049	1,729,657	1,770,452	8,456,014
재원 조달		1,614,260	1,651,596	1,690,049	1,729,657	1,770,452	8,456,014
의존 재원	소 계	1,418,277	1,452,457	1,487,662	1,523,923	1,519,752	7,402,071
	보 조 금						
	국비	716,658	735,484	754,875	774,847	795,420	3,777,284
	시비	701,619	716,973	732,787	749,076	724,332	3,624,787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 교부금						
	소 계	195,983	199,139	202,387	205,734	250,700	1,053,943
구 비	구 비	195,983	199,139	202,387	205,734	250,700	1,053,943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현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직위별 평균 호봉 기준으로 승급에 따른
인상률(3%) 적용 추산

[참고자료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안)

- ◆ 2024년 상반기 위탁종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II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 위탁대상시설 : 3개소

(2023. 8. 31. 기준)

명칭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위탁현황		비고
			정원	현원	위탁체	위탁기간	
서창들	서창남순환로 190-15, 708동 102호 (서창2동, 서창퍼스트뷰)	84.55m ² (지상1층)	20	8	박기현	2019.2.7. ~2024.2.6.	
늘푸른	장승남로69번길 27 (만수6동)	272.78m ² (지상3층)	35	28	석수영	2019.3.1. ~2024.2.29.	
만월	만수서로 97-7 (만수2동)	497.75m ² (지상2층, 지하1층)	98	89	윤희정	2019.3.1. ~2024.2.29.	

- 위탁(예정)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서 창 뜰 : '24. 02. 07. ~ '29. 02. 28.
 - 늘 푸 른 : '24. 03. 01. ~ '29. 02. 28.
 - 만 월 : '24. 03. 01. ~ '29. 02. 28.
- 위탁체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체 선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IV

세부 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3. 10월 중 (20일 이상)
- 공고내용 :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참조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월 중 (7일 이상)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 【붙임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 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위탁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1.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보건복지부)」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붙임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안전관리능력,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제 결과,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2.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V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23. 10월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3. 10월 ~ 11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 '23. 12월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23. 12월

- 붙임 1.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참고자료2]

남동구 공고 제2023 - 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0. 23.

남 동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2023. 8. 31. 기준)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인가일	비고
서창뜰	서창남순환로 190-15, 708동 102호 (서창2동, 서창퍼스트뷰)	84.55㎡ (지상1층)	20 (8)	2014.2.7.	
늘푸른	장승남로69번길 27 (만수6동)	272.78㎡ (지상3층)	35 (28)	2006.3.1.	
만월	만수서로 97-7 (만수2동)	497.75㎡ (지상2층,지하1층)	98 (89)	1996.3.5.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서 창 뜰 : '24. 02. 07. ~ '29. 02. 28.
- 늘 푸 른 : '24. 03. 01. ~ '29. 02. 28.
- 만 월 : '24. 03. 01. ~ '29. 02. 28.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 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3.
- 접수기간 : 2023. 11. 7. ~ 2023. 11. 13.
- 접수장소 :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 접수(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7부 (원본 1부, 사본 16부)
 -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 및 위·수탁받은 원장은 신청 가능)
- ※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위탁체의 관리·책임하에 발생한 미납대금 등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위탁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신청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된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 보험가입금액은 어린이집 연간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 포함)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단, 신규 설치 어린이집은 위탁개시일 하루 전까지 사임하되, 위탁체 선정 후부터 위탁개시일까지의 기간에도 설계용역 등에 참여해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3]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아이사랑꿈터 남동구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2840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1. 30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 조에 의거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인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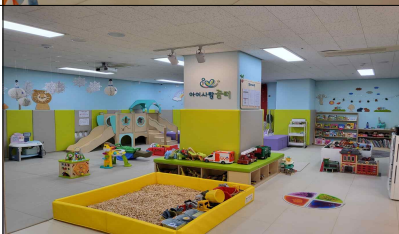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위 탁 명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2~6호점 운영
- 위탁시설

명 칭	소 재 지	시설규모 (㎡)	개소
아이사랑꿈터 2호점	석산로138, 간석어울림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125.4㎡(38평)	21. 1월
아이사랑꿈터 3호점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	66㎡(20평)	
아이사랑꿈터 4호점	논현로106, 어진마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88㎡(26.6평)	
아이사랑꿈터 5호점	아암대로1503번길 98, 에코메트로6단지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	89.96㎡(27평)	
아이사랑꿈터 6호점	장도로86-14, 소래포구어시장 2층	86㎡(26평)	21. 8월

- 위탁기간 : 2023. 12. 1. ~ 2025. 12. 31.(2년 1개월)
- 위탁내용 :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관리 및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시설관리(안전관리, 위생, 청결관리 등) 및 운영
- 소요예산 : 935,330천원(*2023년 예산기준)

□ 위치도

2호점 (간석2동)		
3호점 (구월1동)		
4호점 (논현2동)		
5호점 (논현고잔동)		
6호점 (논현1동)		

☐ **보고사항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참고자료**

- 참고1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참고2 : 관련 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나. 비용발생 요인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시설 및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 : 2023년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침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연간 인상률 3% 적용)
- 비용추계 범위 :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 ~ 6호점 운영비용

나. 추계 결과

- 1) 추계기간 : 2023. 12월 ~ 2025. 12월
- 2) 발생비용 : 935,330천원
(인건비 573,135천원, 사업비 112,865천원, 운영비 249,330천원)
※ 2023년 개소별 연간 지원단가 : 88,51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 국비24%, 시비 38%, 구비 38%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 미 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3,603	274,405	282,633	580,641	
국시비보조금		23,603	274,405	282,633	580,641	
세 출		36,880	442,590	455,860	935,330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36,880	442,590	455,860	935,330	
재원 조달		36,880	442,590	455,860	935,330	
의존 재원	소 계		23,603	274,405	282,633	580,641
	보조금	국비	10,326	106,220	109,406	130,812
		시비	13,277	168,185	173,227	354,68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3,277	168,185	173,227	354,689
	지방세		13,277	168,185	173,227	354,689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인건비 인상 등 보조금 상승요인 반영하여 연간3% 인상을 반영

[참고자료1]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2~6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II 추진방향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위탁 비용절감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안) 별도 수립

III 위탁개요

- ☐ 시설 현황

명 칭	소 재 지	시설규모	개소
아이사랑꿈터 2호점	석산로138, 간석어울림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125.4㎡(38평)	21. 1월
아이사랑꿈터 3호점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1동행정복지센터 2층	66㎡(20평)	
아이사랑꿈터 4호점	논현로106, 어진마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	88㎡(26.6평)	
아이사랑꿈터 5호점	아암대로1503번길 98, 에코메트로6단지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	89.96㎡(27평)	
아이사랑꿈터 6호점	장도로86-14, 소래포구어시장 2층	86㎡(26평)	21. 8월

- ☐ 위탁사무 내용 :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 관리(대상자 모집 및 이용자관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시설장 등 임용사항, 인력운영
 - 시설관리(안전관리, 위생, 청결관리, 하자관리, 건물화재 보험가입 등) 및 운영
 -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놀이 활동을 위한 교구 및 도서 관리
- ☐ 신청자격 :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안·단체
-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 1개월
-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 선정방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 ☐ 소요예산 : 935,330천원
 - 2023. 12 ~ 2025. 12 인건비 및 운영비 : 187,066천원×5개소

IV

세부추진계획

- ☐ 위탁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방법
 - 모 집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자격요건 : 인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기관 운영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 관련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
 - 신청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에 소재하거나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

○ 선 정

-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 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함.

□ 위탁기관 선정절차

- ① 남동구의회 보고 → ② 공고 → ③ 신청자 접수(법인·단체 등) →
④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⑤ 수탁체 결정 → ⑥ 위탁계약 체결 →
⑦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구 -> 시)

□ 추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보고안 제출 : 2023. 9월
-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2023. 10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및 수탁자 선정 : 2023. 10~11월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3. 11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행정사항

- 재위탁 보고(안) 의회 제출 : 2023. 9월
-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홍보
 - 대변인실, 미디어정보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동 및 타구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전국 시·군·구로 공문 발송.

[참고자료2]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41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치·위탁 운영 중인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운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와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
○ 위탁시설 (단위:m²/명)

시설명	소 재 지	연면적	위탁만료일	비 고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6층	325.44m ²	2023.12.31.	재위탁
남동구자살예방센터(부설)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5층	162.72m ²	2023.12.31.	재위탁

<위치도>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내용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위탁 목적 및 시설 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위탁관리 기간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행위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4,525,766천원(3년) (국비47%, 시비25%, 구비28%)

**□ 동의 사항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자료

- 붙임1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위탁기관 선정계획(안)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발생비용 : 4,525,76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2,128,916천원, 시비 1,094,432천원, 구비 1,302,418천원 확보(국비47%, 시비25%, 구비28%)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은 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059,200	1,064,411	1,099,737	3,223,348
	국비보조금	686,150	709,608	733,158	2,128,916
	시비보조금	373,050	354,803	366,579	1,094,432
세 출		1,481,595	1,498,535	1,545,636	4,525,76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운영	1,481,595	1,498,535	1,545,636	4,525,766
재원 조달		1,481,595	1,498,535	1,545,636	4,525,766
의존 재원	소 계	1,059,200	1,064,411	1,099,737	3,223,348
	보조금	국비	686,150	709,608	2,128,916
		시비	373,050	366,579	1,094,432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422,395	434,124	445,899	1,302,418
	구비	422,395	434,124	445,899	1,302,418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1]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위탁기관 선정계획(안)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치·위탁운영 중인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 선정·위탁 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 법적근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마목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 202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II 기본방침

- ☐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의한 인력, 사업 내용, 위탁기간, 예산편성기준으로 운영
- ☐ 센터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정신질환자 관리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수탁기관 선정

Ⅲ

운영현황

□ 개소일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2008.4.1.

○ 남동구자살예방센터 : 2023.1.3.

□ 수탁기관 : 예인병원

□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5,6층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6층) : 325.44㎡ (98.4평)

○ 남동구자살예방센터(5층) : 162.72㎡ (49.2평)

□ 인력구성 : 27명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원	현원	센터장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 복지사	작업 치료사	간호사
25	21	1	9	8	2	1

○ 남동구자살예방센터

정원	현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비고
7	6	3	1	1	

□ 사업예산(23년) : 1,450,764천원(국47:시25:구28)

○ 정신건강복지센터 : 1,146,080천원(국47:시25:구28)

○ 자살예방센터 : 304,684천원(국45:시24:구31)

Ⅳ

민간위탁 세부사업 계획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 현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기관 : 예인병원

○ 사업대상 : 지역 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 주요사업 :

-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증진사업 : 상담, 정신건강 교육, 찾아가는 심리지원홍보, 캠페인
- 아동·청소년사업 : 조기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중재,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실시
- 지역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 현장대응 및 위기개입, 자가진단 검사, 전문의 상담
- 자살예방사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캠페인 인식개선 홍보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 : 애도상담, 정신건강교육, 법률 행정비 지원 등

○ 인력기준

- 센터장 자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경력 1년이상(공중보건 의사 제외)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8년 이상인자, 보건소장(직영형)
- 사업인력 : 상근인력 32명
 -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25명
 - ※ 자살예방센터 : 7명
 - ※ 인력기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준용

○ 사업예산 : 1,450,764천원(국47:시25:구28)

- 정신건강복지센터 : 1,146,080천원(국47:시25:구28)
- 자살예방센터 : 304,684천원(국45:시24:구31)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수탁 참여기관 공개모집

- 법적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방법 : 구, 보건소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등 붙임 서식 1~8
- 위탁공고 및 접수기간

- 공 고 : 2023.10.23.(월) ~ 2023.11.13.(월) (22일간)

- 접 수 : 2023.11.06.(월) ~ 2023.11.17.(금) (12일간)

※ 평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 (☎453-5802)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위탁기관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를 인천시로 제한 한다

- 위탁조건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개최 계획

○ 법적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공무원 2명, 위촉직 5명(구의원 3인, 당해전문가 2인))
- 구성시기 : 2023.11.24.(금)
- 임 기 : 본위원회 개최 시 효력발생, 종료 후 자동 해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11.30.(목) 14:00~16:00

※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개최장소 : 남동구보건소

○ 선정방법 및 발표

-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심사평가표 「붙임2」에 의거 평가하여 최고득점 기관선정
- 단, 신청기관이 1곳일 경우 평가표 「붙임3」에 의거 적정성검토

(가.부)로 결정

- 심사발표적격심사 후 수탁자 개별통보

○ 수탁기관 선정 후 처리

- 선정 수탁기관은 센터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승인
- 협약서 체결
 - 시 기 : 수탁기간 선정일 ~ 12월
 - 내 용 : 수탁자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인수인계 : 2023.12.
- 사업업무시작 : 2024.1.1.

○ 계약조건

- 위탁사업비로 구입한 비품 등은 남동구보건소 재산으로 귀속됨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협약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V

기대효과

-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활성화
- ☐ 재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VI

향후 추진일정

- 의회동의 2023. 10.
- 선정공모 2023. 10. ~ 2023.11.
- 수탁기관 접수 2023. 11.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3. 11.
- 협약체결 2023. 12.

- 붙임 1. 위탁운영기간 모집공고(안) 1부.
2.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 1부.
3.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1개소 신청시) 1부.
4. 심사집계표 1부.
5. 위탁운영에관한 협약서 1부.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1부.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8.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끝.

[붙임1]

남동구 치매정신건강과 공고 제 2023 - 호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안)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 .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시설 현황

위탁시설	인력	소재지	면적(m ²)	사업비(2023년)
남동구정신건강 복지센터	21명	남동구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6층	325.44m ²	1,146백만원
남동구자살예방센터 (부설)	5명	남동구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5층	162.72m ²	304백만원

※ 2023년 예산기준이며 사업예산은 인력확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

- 정신건강 환경조성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
- 정신건강 위기개입 업무
-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복지서비스 연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
-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인적자원 지원
- 운영위원회 운영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안내 참고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13.(월) (22일간)
- 접수기간 : 2023. 11. 06.(월) ~ 2023. 11. 17.(금) (12일간)
- ※ 신청서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치매정신건강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 서식은 남동구청(공고), 남동구보건소홈페이지(보건소소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3. 위탁기관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를 인천시로 제한함

○ 위탁조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 승계하도록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체결에 의함

4. 위탁기관 선정

○ 선정절차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결과 개별통보

○ 사업제안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개별통지
- 참석자 : 기관 임직원 및 센터장(내정자)
※ 30분 이내, 서류 및 파워포인트 설명 가능

○ 선정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내 용
계	100	
재정능력	20	사업수행의 재정부담능력 기관의 경영상태, 사업운영의 안정성
공신력	30	설립목적, 사업내용의 공공성 국가·공공기금의 지원사업 수행실적 기관의 신망도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50	전문화된 사업인력 구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수탁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규모있는 책정 시설안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보

5. 제출서류

- [서식#1]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서식#2]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법인이력 및 현황 1부
(현황서 제출시 1.법인정관사본 2.등기부등본 3.설립인가증사본 4.인감증명서 첨부)
- [서식#4]신청자(센터장) 이력서 1부
- [서식#5]경비부담 승낙서 1부

※ 상기 서류는 모두 함께 제본하여 10권 제출 ※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A4크기 상철로 편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신청을 무효 처리함
- 신청서 등은 남동구홈페이지(www.namdong.go.kr)참조
- 수탁기관은 선정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2024년 예산확정 후 재작성 제출함
- 문의사항 :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팀(☎ 032-453-5802)

[서식#1]

남동구청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신청서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국공립정신병원, 종합병원(정신건강의학과), 민간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대학, 대학병원 중 택일		
	신청목적			
위탁사업 책임자 비고	소 속		직 위	
	성 명		자격분야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와 같이 남동구청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의 일

기관대표 :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서식#2]

사업계획요약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

다. 사업계획(내용)

○

라. 예산 운영 계획(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계	기금	시비	군비	자부담	비고
합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5.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

- ☐ 필요성
- ☐ 목 표
 - 연도별 세부목표 제시
 - 2024년 주력(핵심)사업 제시(근거자료와 함께)
- ☐ 사업대상
- ☐ 사업조직 및 운영인력
 - 사업수행인력 계획
 - ※ 자격별로 구체적 기재
 - 기타 운영 계획
- ☐ 사업내용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 조정
 - 정신건강 환경조성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
 - 정신건강 위기개입 업무
 -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복지서비스 연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
 -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인적자원 지원
 - 2024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 운영
- ☐ 월별 추진일정
- ☐ 대상자 및 사업 평가 방안
- ☐ 운영 예산서
 - ※ 사업신청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임의작성 가능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증빙자료 제출

[서식#3]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법인설립목적

○

☐ 주요시설현황

○

○

☐ 기구 및 인력현황

☐ 주요 자산현황

☐ 주요연혁

○

○

☐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재원조달 지원 계획

※ 시설비나 사업운영비 지원 계획 등

※ 별첨 : 1. 법인정관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서식#4]

센터장(예정자)의 이력 및 경력사항

1. 이력사항

소속		직위		자격분야	
성명					
생년월일		전화	사무실:		
			자택: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경력	기간	기관	직위	비고	

2. 주요실적

- 기재형식 자유

※ 별첨 : 자격증 사본

[서식#5]

경 비 부 담 승 낙 서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남동구자살예방센터 위탁사업의 위탁자로
선정될 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부족 제 경비 일체를 본 기관에서
부담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3. . .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2]

남동구청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 사업 신청기관 : _____

구 분	평 가 지 표	평 가 근 거	배점	배 점 기 준			
				매우양호 (10)	양호 (7)	보통 (5)	미흡 (3)
재정적 능력 (20)	1. 사업수행의 재정 부담능력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산 배정 지연 시 사업비 우선부 담능력 및 기타 센터지원능력	10				
	2. 기관의 경영상태, 사업운영의 안정성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10				
공신력 (30)	3. 설립목적, 사업 내용의 공공성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위탁 사업에 적합하고 공공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10				
	4. 국가·공공기금의 지원사업 수행실적	국가 또는 공공자금의 지원 을 받아 수행한 실적	10				
	5. 기관의 신망도	기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인지도를 통해 지역 내 기관 과의 협력관계 조성능력과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여부	10				
전문성 및 사업 수행 능력 (50)	6. 전문화된 사업인력 구성	정신전문요원 등 전문화된 인력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의 전문성 확보	10				
	7.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수탁기관 내에 정신과 영역의 전문 인력 또는 대학·교육과 정이 있어 센터운영에 지원, 자문, 전문성 강화 여부	10				
	8. 수탁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위탁사업내용에 맞추어 역량 있는 사업추진능력 여부 (목표설정,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10				
	9. 사업예산의 규모 있는 책정	예산대비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인건비, 사업비 구성)	10				
	10. 시설안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보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대처 계획 및 응급상황 시 대처 체계 여부	10				
총점	100점(만점)			배점결과 획득총점			

2023. . .

심사위원 : (인 또는 서명)

[붙임3]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 사업 신청기관 : _____

구 분	평 가 지 표	평 가 근 거	평가결과 (해당란에 ○ 표시)	
			가	부
재정적 능력 (20)	1. 사업수행의 재정부담능력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산 배정 지연 시 사업비 우선부담능력 및 기타 센터지원능력		
	2. 기관의 경영상태, 사업운 영의 안정성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공신력 (30)	3. 설립목적, 사업내용의 공공성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위탁사업 에 적합하고 공공성이 확보되었는 지 여부		
	4. 국가·공공자금의 지원사업 수행실적	국가 또는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실적		
	5. 기관의 신망도	기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인지 도를 통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 관계 조성능력과 책임감 있는 업 무추진 여부		
전문성 및 사 업수행 능력 (50)	6. 전문화된 사업인력 구성	정신전문요원 등 전문화된 인력 구 성을 통한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7.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수탁기관 내에 정신과 영역의 전문 인력 또는 대학·교육과정이 있어 센터운영에 지원, 자문, 전문성 강 화 여부		
	8. 수탁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위탁사업내용에 맞추어 역량있는 사업추진능력 여부 (목표설정,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9. 사업예산의 규모있는 책정	예산대비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인건비, 사업비 구성)		
	10. 시설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확보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대처계획 및 응급상황 시 대처체계 여부		

최종 적격 판정 (가, 부)

2023. . .

심사위원 :

(인 또는 서명)

[붙임4]

심 사 집 계 표

안 건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남동구자살예방센터 수탁기관 선정								
일 시	2023. .			장 소					
구분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총점

※ 결과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남동구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선정기관 :

2023. . .

민간위탁 심의위원장 (인)

남동구보건소

[붙임5]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남동구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보건소(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행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임대 및 사용료)①“을”은 건물임대 시 보증금을 부담하고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은 사업예산에서 지출하며, 단, 수탁자 건물 사용 시는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② 위치선정 및 임대료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3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내용)“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사업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지역 내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자원 조정
2.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자 발견 등록·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3.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4. 대상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5.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6.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 지원
7. 긴급지원대상자 발굴(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사례관리 등
9.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역사회 현황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1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예방 및 교육)
11.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업
12.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연계 (1577-0199 상담전화)
13.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홍보,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14. 정신보건 자문제공, 교육, 홍보 등
15.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6.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사업대상자 및 이용자 우선순위) 이 계약서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사업의 대상 지역은 남동구 관할지역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미설치 시·군·구 지역 주민은 수용이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 이내로 하며, 이용자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주여성 및 자녀,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한다.

제6조 (사업의 관리 운영) ①“을”은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이 “갑”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을 지연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②“을”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를 총괄책임자로 선정하여 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 지휘하도록 한다.

③“을”은 정신보건사업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한 같다.

④“을”은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갑”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보고내용 중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보완 개선 하여야한다.

⑤“을”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등 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⑦“을”은 위탁사업을 “갑”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⑧“을”은 센터의 지적재산권(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갑”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7조 (근무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보건소 통상 업무시간(혹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와 대상자의 특성으로 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인력) ① 종사자 임면권은 “을”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하며 주 8시간이상 비상근으로 하며, 인력구성 현황을 “갑”에게 제출한다.

그 외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준한다.

③ 센터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인력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지급) ①“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 한다.

②“을”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갑“에게 신청하며, 총 사업비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집행관리 등) ①“을”의 책임 하에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정산 시 회계 서류 일체 복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지도·감독한다.

③“을”은 사업비 집행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만약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④ 다음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를 분기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항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을”은 사업수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갑”의 사업비 지급이전에 “을”의 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11조 (물품 관리책임 및 소유권) 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갑”의 부담으로 구입하거나 인계한 비품 및 집기 또는 후원받은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는 “을”은 “갑”에게 이를 조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을”은 비품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비품 목록 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비품의 소유권, 품명, 수량, 단가, 구매처, 구매일자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물품 등을 “을”에게 무상 사용토록 하고, “을”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행정지원) ①“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 “을”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 구성은 센터장,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하여 “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토록 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센터운영 자문을 위하여 “을”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서류 제출)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을”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등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보험등가입) ①“을”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이 위탁재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재산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①“수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위·수탁기간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①“구”와 “수탁기관”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수탁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구”는 “수탁기관”와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③“구”는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등) ①이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②“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갑”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③제 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한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본 계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개정한다.

제20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및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계약의 체결효력) ①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계약서상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 할 때 까지 효력이 있다.

②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공증을 실시하며, 각 1부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갑”(위탁자) 남동구 보건소장

조 은 행 (인)

“을”(수탁자) ○○○○○○○장

○ ○ ○ (인)

[붙임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약속서

-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남동구보건소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⑤ 남동구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위탁기관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중대(산업,시민)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법규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업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시작 전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점검 및 조치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절차 준수
3. 작업자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4.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 공간 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
6.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익(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기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성실 이행

(수탁기관명)는 본 (위탁사무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8]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기관명) 는 남동구 민간위탁사무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참고자료2]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42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위탁 운영 중인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협약기간 만료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운영, 전문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추진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 의 사전 동의 필요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명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 위탁내용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목적 및 시설 사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관리 기간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행위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시설 개요

(단위:㎡/명)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위탁만료일	비고
남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백범로369, 4층	156.7	2023.12.31.	재위탁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소요예산 : 903,795천원(3년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동의사항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자료
 - 붙임1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계획안 1부.
 - 붙임2 : 관계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발생비용 : 903,795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592,844천원, 구비 310,951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 은 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93,715	197,589	201,540	592,844
국시비보조금			193,715	197,589	201,540	592,844
세 출			295,320	301,226	307,249	903,795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295,320	301,226	307,249	903,795
재원 조달			295,320	301,226	307,249	903,795
의존 재원	소 계		193,715	197,589	201,540	592,844
	보조금	국비	126,410	128,938	131,516	386,864
		시비	67,305	68,651	70,024	205,980
	지방교부세		-	-	-	-
	조정교부금		-	-	-	-
자체 수입	소 계		101,605	103,637	105,709	310,951
	지방세		-	-	-	-
	세외수입		-	-	-	-
	구비		101,605	103,637	105,709	310,951
지 방 채			-	-	-	-
기 금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기 (채무부담, 민자 등)			-	-	-	-

[참고자료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계획(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 법적근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마목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 202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II 기본방침

- ☐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인력, 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편성기준으로 운영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수탁기관 선정
- ☐ 센터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정신 질환자 관리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

Ⅲ

운영현황

- ☐ 개 소 일 : 2014. 11. 8.
- ☐ 운영형태 :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 *현 운영기관 : 새희망병원
-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 센터위치 : 남동구 백범로369, 4층
- ☐ 인력기준 : 5명
 - 센터장 1명(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 팀장 외 3명(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상근인력)
- ☐ 주요시설 :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 ☐ 사업대상 :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질환자와 가족,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기타 지역주민
- ☐ 주요사업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 중독관련 사업 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가정방문/내소상담/전화상담(온라인상담 포함)등)
 - 중독자 및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지역 내 중독관련 자문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참고
- ☐ 사업예산(23년) : 295,320천원(국44%, 시23%, 구33%)

IV

민간위탁 세부사업 계획

□ 위탁모집개요

○ 법적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위탁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에 의거
위탁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함.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탁기관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관·단체
-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를 인천시로 제한 한다

- 위탁조건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방법 : 구,보건소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13.(월) (22일간)

○ 접수기간 : 2023. 11. 06.(월) ~ 2023. 11. 17.(금) (12일간)

○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등 붙임 서식1~4

○ 제출방법 : 남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453-5804)

평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위탁심사계획

- 법적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6명~9명 이하
[관계공무원, 구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소지자 등]
 - 구성시기 : 2023년 11월
 - 임 기 : 본 위원회 개최 시 효력발생 및 종료 후 자동해산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개최
 - 일 시 : 2023. 11. 30.(목)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개최장소 : 남동구보건소
- 선정방법 및 통보 :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여 심사평가표 「붙임2-1」에 의거 평가하여 최고득점 기관선정하나 신청기관이 1곳일 경우 평가표 「붙임2-2」에 의거 적정성 검토(가.부)로 결정 후 수탁자개별통보
- 계약조건
 - 위탁사업비로 구입한 비품 등은 남동구보건소 재산으로 귀속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협약 체결 후 필요시 15일 이내에 협약을 공증받아 제출
 - 근로자 보호약서 및 이행서약서 제출「붙임5~7」

□ 이의신청접수

- 법적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1조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위탁협약계획

- 선정 수탁기관은 센터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협약서 체결
 - 시기 : 수탁기간 선정일 ~ 12월
 - 내용 : 수탁자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인수인계(위탁기관 변경시) : 2023년 12월
- 사업업무시작 : 2024년 1월 1일

V

기대효과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중독문제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의 자활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 등 재활프로그램 제공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VI

향후 추진일정

- 의회동의 : 2023. 10. 20.(금)
-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13.(월) (22일간)
- 접수기간 : 2023. 11. 06.(월) ~ 2023. 11. 17.(금) (12일간)
- 위탁심사 : 2023. 11. 30.(목)
- 협약체결 : 위탁기간 만료 전
- 협약서 공증 접수(필요시) :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VII

붙임파일

- 붙임 1 : 모집공고(안)
- 붙임 2-1 :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붙임 2-2 :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신청기관 1곳-적격 판정용)
- 붙임 3 : 심사집계표
- 붙임 4 :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 붙임 5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 붙임 6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붙임 7 :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붙임 1**모집공고(안)**

남동구 치매정신건강과 공고 제 2023호- 호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안)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 .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시설 현황

위탁시설	인력	소재지	면적 (㎡)	사업비(2023년)
남동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5명	남동구 백범로369 (간석동) 4층	156.7	295백만원

※ 2023년 예산기준이며 사업예산 변경 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중독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관내 중독 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 중독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중독질환자 사례 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지역방문)
 - 중독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지역주민 대상 중독 관련 상담·교육 등)
 -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관내 중독 관련 자문(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등)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 관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지원 사업
-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참고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13.(월)(22일간)
- 접수기간 : 2023. 11. 6.(월) ~ 2023. 11. 17.(금)(12일간)
- ※ 신청서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치매정신건강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 서식은 남동구청(공고), 남동구보건소홈페이지(보건소소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3. 위탁기관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주된 사무실)를 인천시로 제한함
- 위탁조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 승계하도록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

4. 위탁기관 선정

○ 선정절차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결과 개별통보

○ 사업제안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개별통지
- 참석자 : 기관 임직원 및 센터장(내정자)
※ 30분 이내, 서류 및 파워포인트 설명 가능

○ 선정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내 용
계	100	
재정능력	20	사업수행의 재정부담능력 기관의 경영상태, 사업운영의 안정성
공신력	30	설립목적, 사업내용의 공공성 국가·공공기금의 지원사업 수행실적 기관의 신망도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50	전문화된 사업인력 구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수탁운영방안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규모있는 책정 시설안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보

5. 제출서류

- [*서식1]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서식2]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서식3]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센터장의 이력 및 경력사항 각 1부
(현황서 제출시 1.법인정관사본 2.등기부등본 3.설립인가증사본 4.인감증명서 첨부)
- [*서식4]경비부담승낙서 1부

※ 상기 서류는 모두 함께 제출하여 10권 제출 ※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A4크기 상철로 편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신청을 무효 처리함
- 신청서 등은 남동구홈페이지(www.namdong.go.kr)참조
- 수탁기관은 선정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2024년 예산확정 후 재작성 제출함
- 문의사항 : 남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 032-453-580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신청서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신청서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국공립정신병원, 종합병원(정신과), 민간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대학, 대학병원 중 택일		
	신청목적			
위탁사업 책임자 비고	소 속		직 위	
	성 명		자격분야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와 같이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기관대표 :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서식
2-1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요약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

다. 사업계획(내용)

○

라. 예산 운영 계획(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계	기금	시비	군비	자부담	비고
합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5. 기대효과

○

***서식
2-2****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필요성☐ 목 표

- 연도별 세부목표 제시
- 2024년 주력(핵심)사업 제시(근거자료와 함께)

☐ 사업대상☐ 사업조직 및 운영인력

- 사업수행인력 계획
 - ※ 자격별로 구체적 기재
- 기타 운영 계획

☐ 사업내용

- 중독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추진 계획
- 중독예방교육 및 홍보계획
- 중독관리사업의 전문성(프로그램개발 운영 계획)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
 - ※ 세부적으로 자세히 작성

☐ 월별 추진일정☐ 대상자 및 사업 평가 방안☐ 운영 예산서

- ※ 사업신청 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임의작성 가능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증빙자료 제출

*서식
3-1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법인설립목적

○

☐ 주요시설현황

○

☐ 기구 및 인력현황

☐ 주요 자산현황

☐ 주요연혁

○

○

☐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재원조달 지원 계획

※ 시설비나 사업운영비 지원 계획 등

※ 별첨 : 1. 법인정관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서식
3-2

센터장(예정자)의 이력 및 경력사항

센터장(예정자)의 이력 및 경력사항

1. 이력사항

소속		직위		자격분야	
성명					
생년월일		전화	사무실:		
			자택:		
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경력	기간	기관	직위	비고	

2. 주요실적

- 기재형식 자유

※ 별첨 : 자격증 사본

서식 4*경비부담승낙서**

경 비 부 담 승 낙 서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의 위탁자로 선정될 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부족 제 경비 일체를 본 기관에서 부담지원 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3. . .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2-1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 사업 신청기관 : _____

구 분	평 가 지 표	평 가 근 거	배점	배 점 기 준			
				매우 양호 (10)	양호 (7)	보통 (5)	미흡 (3)
재정적 능력 (20)	1. 사업수행의 재정부담능력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산 배정 지연 시 사업비 우선 부담능력 및 기타 센터지원 능력	10				
	2. 기관의 경영상태, 사업운영의 안정성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10				
공신력 (30)	3. 설립목적, 사업내용의 공공성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위탁 사업에 적합하고 공공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10				
	4. 국가·공공기금의 지원사업 수행실적	국가 또는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실적	10				
	5. 기관의 신망도	기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인지도를 통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관계 조성 능력과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 여부	10				
전문성 및 사업 수행 능력 (50)	6. 전문화된 사업인력 구성	정신전문요원 등 전문화된 인력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10				
	7.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수탁기관 내에 정신과 영역의 전문 인력 또는 대학·교육 과정이 있어 센터운영에 지원, 자문, 전문성 강화 여부	10				
	8. 수탁운영방안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위탁사업내용에 맞추어 역량 있는 사업추진능력 여부 (목표설정,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10				
	9. 사업예산의 규모 있는 책정	예산대비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인건비, 사업비 구성)	10				
	10. 시설안전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확보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대처 계획 및 응급상황 시 대처 체계 여부	10				
총점	100점(만점)			배점결과 획득총점			

2023. . .

심사위원 : (인 또는 서명)

붙임
2-2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표(안)

□ 사업 신청기관 : _____

구 분	평 가 지 표	평 가 근 거	평가결과 (해당란에 ○ 표시)	
			가	부
재정적 능력 (20)	1. 사업수행의 재정부담능력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산 배정 지연 시 사업비 우선부담 능력 및 기타 센터지원능력		
	2. 기관의 경영상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공신력 (30)	3. 설립목적, 사업내용의 공공성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이 위탁사업에 적합하고 공공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4. 국가·공공기금의 지원사업 수행실적	국가 또는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실적		
	5. 기관의 신망도	기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인지도를 통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관계 조성능력과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여부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50)	6. 전문화된 사업인력 구성	정신전문요원 등 전문화된 인력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7.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수탁기관 내에 정신과 영역의 전문 인력 또는 대학·교육과정이 있어 센터운영에 지원, 자문, 전문성 강화 여부		
	8. 수탁운영방안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위탁사업내용에 맞추어 역량 있는 사업추진능력 여부 (목표설정,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9. 사업예산의 규모 있는 책정	예산대비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인건비, 사업비 구성)		
	10. 시설안전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확보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대처계획 및 응급상황 시 대처체계 여부		

2023. . .

심사위원 :

(인 또는 서명)

붙임 3

심사집계표

심사집계표

안 건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일 시	2023. .			장 소					
구분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총점
신청기관1									
신청기관2									
신청기관3									

※ 결과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선정기관 :

2023. . .

민간위탁 심의위원장 (인)

남동구보건소

붙임 4**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보건소(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3,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효율적인 수행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임대 및 사용료) ① “을”은 건물임대 시 보증금을 부담하고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은 사업예산에서 지출하며, 단, 수탁자 건물 사용 시는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② 위치선정 및 임대료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3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내용)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사업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알코올·마약 등 기타중독자 관리사업
- 대상자 발견 등록·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주간보호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 중독질환자 편견 해소 홍보, 중독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 보건복지, 지역 법무, 경찰 및 응급지원 연계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 진단 연구 및 자원조정·중재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중독관리사업

제5조(사업대상자 및 이용자 우선순위) 이 계약서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사업의

대상 지역은 남동구 관할지역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미설치 시.군.구 지역 주민은 수용이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 이내로 하며, 이용자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주여성 및 자녀,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한다.

제6조(사업의 관리 운영) ①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이 “갑”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을 지연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를 총괄책임자로 선정하여 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 지휘하도록 한다.

③ “을”은 정신보건사업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한 같다.

④ “을”은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갑”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보고내용 중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보완 개선 하여야한다.

⑤ “을”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등 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⑦ “을”은 위탁사업을 “갑”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⑧ “을”은 센터의 지적재산권(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갑”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보건소 통상 업무시간(혹은 공무원복무규정)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와 대상자의 특성으로 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인력) ① 종사자 임면권은 “을”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로 하며 주 8시간이상 비상근으로 하며, 인력구성 현황을 “갑”에게 제출한다.

그 외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준한다.

③ 센터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종사인력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 한다.

② “을”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갑”에게 신청하며, 총 사업비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관리 등) ① “을”의 책임 하에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정산 시 회계 서류 일체 복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지도·감독한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만약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④ 다음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를 분기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항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을”은 사업수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갑”의 사업비 지급이전에 “을”의 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11조(물품 관리책임 및 소유권) ①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갑”의 부담으로 구입하거나 인계한 비품 및 집기 또는 후원받은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는 “을”은 “갑”에게 이를 조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을”은 비품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비품 목록 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비품의 소유권, 품명, 수량, 단가, 구매처, 구매일자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물품 등을 “을”에게 무상 사용토록 하고, “을”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행정지원) ①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 “을”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센터장,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하여 “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토록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센터운영 자문을 위하여 “을”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계서류 제출)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을”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등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보험등가입) ① “을”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이 위탁재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재산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 ① “수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간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와 “수탁기관”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수탁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는 “수탁기관”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③ “구”는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이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갑”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한 시설물이나 기타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개정한다.

제20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및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계약의 체결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계약서상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 할 때 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공증을 실시하며, 각 1부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갑”(위탁자) 남동구 보건소장

“을”(수탁자) ○○○○○○○장

조 은 행 (인)

○ ○ ○ (인)

붙임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협약서

-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000기관에서 000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남동구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기관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6**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중대(산업,시민)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법규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업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시작 전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점검 및 조치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절차 준수
3. 작업자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4.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 공간 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
6.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기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성실 이행

(수탁기관명)는 본 (위탁사무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7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

(위탁병원명) 는 남동구 민간위탁사무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참고자료2]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7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1지구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정정)

관보 제1828호 및 남동구 공고 제2023-1680호(2023. 9. 20.)로
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1지구 소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도림1지구 소2-2호선 설치공사

3. 사업규모(정정)

- 당초: B=8.0m, L=159m, A=1,565.3m²
- 정정: B=8.0m, L=159m, A=1,565.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정정)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4,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별첨1]용지조서(정정)

용 지 조 서 (당초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잔 여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26-12	도	8.0	8.0		8.0		공	인천광역시				
2	30-25	도	164.5	164.5		164.5		공	인천광역시				
3	30-24	도	1,420.7		4.1	4.1	1,416.6	공	인천광역시				
4	30-6	도	1,464.4		3.4	3.4	1,461.0	공	인천광역시				
5	111-15	전	0.7		0.7	0.7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 **** *				
6	111-16	전	308.4	308.4		308.4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 **** *				
7	111-6	전	976.9		43.4	43.4	933.5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 **** *				
8	110-4	전	1,417.1		98.3	98.3	1,318.8	권*숙 외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 **** *				
9	110-39	전	28.5	28.5		28.5		권*숙 외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 **** *				
10	611-74	도	232.4		3.5	3.5	228.9	국	국토교통부				
11	106-4	전	6.0	6.0		6.0		박*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12	108-1	전	78.8	78.8		78.8		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13	108	전	18.0		14.4	14.4	3.6	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14	611-78	도	145.9	145.9		145.9		국	국토교통부				
15	110-38	전	2.0	2.0		2.0		권*숙 외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 **** *				

용 지 조 서 (당초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잔 여 면 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6	106-6	전	96.5	96.5		96.5		박*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17	106-2	전	462.5		31.6	31.6	430.9	박*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18	109-1	전	40.4	40.4		40.4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19	109	전	435.6		45.8	45.8	389.8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20	611-77	도	215.5		3.0	3.0	212.5	국	국토교통부				
21	104	전	3,593.1		0.3	0.3	3,592.8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22	104-5	전	344.4		4.3	4.3	340.1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23	104-6	전	245.5	245.5		245.5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24	105-1	대	369.7		23.8	23.8	345.9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만수동)	근저당 권자	
25	105-7	대	39.0	39.0		39.0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만수동)	근저당 권자	
26	105-6	대	112.3	112.3		112.3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만수동)	근저당 권자	
27	611-76	도	9.2	9.2		9.2		국	국토교통부				
28	103-4	임	3.7	3.7		3.7		윤*덕 외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 *	근저당 권자	
계				1,288.7	276.6	1,565.3							

용 지 조 서(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잔 여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26-3	도	17,503.0	8.0	-	8.0	17,495.0	공	인천광역시				
2	30-6	도	3,049.6	165.0	7.0	172.0	2,877.6	공	인천광역시				
3	111-6	전	1,286.0	308.0	44.0	352.0	934.0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 **** *				
4	110-4	전	1,447.6	31.0	98.0	129.0	1,318.6	권*숙 외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 **** *				
5	106-4	전	6.0	6.0	-	6.0	-	박*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6	108	전	96.8	79.0	14.0	93.0	3.8	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7	611-74	도	593.8	146.0	7.0	153.0	440.8	국	국토교통부				
8	106-2	전	559.0	97.0	31.0	128.0	431.0	박*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9	109	전	476.0	40.0	46.0	86.0	390.0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10	104	전	4,183.0	246.0	4.0	250.0	3,933.0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11	105-4	대	399.0	39.0	-	39.0	360.0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만수동)	근저당 권자	
12	105-1	대	482.0	112.0	24.0	136.0	346.0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28 (만수동)	근저당 권자	
13	611-49	도	419.0	9.0	-	9.0	410.0	국	국토교통부				
14	103-3	임	540.1	4.0	-	4.0	536.1	윤*덕 외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	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 *	근저당 권자	
계				1,290.0	275.0	1,565.0							

[별첨2]지장물조서(정정)

지 장 물 조 서

지장물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비 고
		당초	정정					성명	주소	
1	도림동	111-16	111-6	능형망 웬스	담장	H=1.5m	L = 10.0 m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 **** *	지번 변경
				컨테이너	사무실	9.0X3.0, 4.0X3.0, 3.0X2.5	3 동			
				PE	물탱크	100kg/EA	75 개소			
2	도림동	108-1	108		수목	홍고 20cm, H=5.0m	1 주	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지번 변경
					수목	홍고 35cm, H=6.5m	2 주			
3	도림동	106-2	106-2	함석	창고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194.4 m ²	박*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6번길 ****	지번 변경
					정화조		1 개소			
				메쉬	대문	B=2.6m, H=1.8m	1 개소			
					수목	홍고 35cm, H=6.5m	1 주			
4	도림동	104	104	슬레이트	창고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	298.1 m ²	윤*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16번길 ****	지번 변경
				EGI웬스	담장	H=3.0m	L = 23.5 m			

[별첨3]전주조서(변경없음)

전 주 위 치 조 서

구 분	부가시설	위치(STA)	방 향	전주 및 보안등 번호	소 관 청	비 고
한전주		0+103.4	좌	8818-461-도림지선 32-L3-R1	한국전력	611-78번지 국토교통부
통신주		0+108.7	좌		한국통신	104-6번지 윤*덕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116호

도시관리계획(소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마목의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①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218,947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계		218,947	100.0	
소계		141,062	64.5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7,517	21.6	
	제3종일반주거지역	53,152	24.5	
	준주거지역	40,393	18.4	
일반상업지역		73,189	33.3	
자연녹지지역		4,696	2.2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 일원	171,979.0 (73,668.0)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3	7,087	124,450	5	3,059	58,541	14	2,326	31,416	4	1,702	34,493
기정	대로	2	1,413	37,048	-	-	-	1	343	10,098	1	1,070	26,950
기정	중로	8	4,040	74,085	2	2,763	55,581	5	780	11,694	1	497	6,810
기정	소로	13	1,634	13,317	3	296	2,960	8	1,203	9,624	2	135	733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4	30~34	보조간선	343	논현동11-407 (논현2지구계)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2007-53호	
기정	대로	3	76	25~31	집산도로	1,070 (583)	대3-23	중1-90	일반도로		인고 제2002-310호	
기정	중로	1	90	20	국지도로	180	중1-302	대3-76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간선	2,583 (296)	소래-논현지구 지구계남동측	대1-2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8	15~18	국지도로	127	중(소래) 3-2	대3-7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도로	390 (128)	대3-76	논현동21-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2	110	15~18	국지도로	110	대3-76	중(소래)3-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소래1	18	국지도로	107	대3-76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중로	3	소래2	12~16	국지도로	497	대2-74	중1-30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1	10	국지도로	50	대3-76	소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0	대3-76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4	9.5~10	국지도로	232	소2-1	대2-74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도로	127	중2-109	대2-74	일반도로		남동구고시 제1997-23호	
기정	소로	1	소래3	10	국지도로	14	중1-302	논현동 111-252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0	대3-76	109-8호 (소래초교)	일반도로		인고 제1994-208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0	대3-76	소1-8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40	중1-90	중(소래) 3-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소래4	8	국지도로	112	소1-3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5	8	국지도로	100	중2-58	소2-9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6	8	국지도로	79	소2-9	소(소래)2-7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7	8	국지도로	204	소2-9	소(소래)3-2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소래8	4	특수도로	31	중1-302	소(소래)2-7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4	논현동 111-10	중로 1-302	일반도로		남동구고시 제2017-75호	역사 공원 중복 결정
기정	중로	2	768	16	특수도로	46	논현동 111-431	논현동 111-167	보행자 전용도로			

※ ()의 구역내 사항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논현동 111-36일원	73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주차장	논현동 66-99일원	4,444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주차장	논현동 66-96일원	3,375	인고 제2011-225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일반광장	논현동 111-329 일원	864	인고 제2011-225호	

(2)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	역사공원	남동구 논현동 111-13 일원	4,264	인고 제2011-225호	소로3-10호선 중복결정
기정	②	소래 소공원	소공원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4,610	인고 제2012-324호	지하주차장③, 유수지 일부 중복결정

주1) 소공원②은 지하주차장③ 3,375㎡ 전체중복, 유수지 전체 1,632㎡ 중 680㎡ 중복

주2) 역사공원①은 소로3-10호선 634㎡ 전체 중복

(3)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3번지 일원	1,558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2	1,872.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1	2,677.8	인고 제2011-225호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75일원	322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70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일원	154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④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87일원	271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⑤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60일원	183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남동구 논현동 66-98일원	1,632	인고 제2012-324호	소공원②과 중복결정

주) 유수지는 소공원② 전체 4,610㎡ 중 680㎡ 중복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	남동구 논현동 66-104일원	492	인고 제2011-225호	오수중계 펌프시설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가) 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위 치		면적(m ²)	
주거 계	32,753	-		32,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1BL	10,236	1	109-202대	160	
		2	109-200답	320	
		3	109-198대	456	
		4	109-158대	510	○ 공동개발 지정
			109-159답	20	
			소계	530	
		5	109-157대	623	
		6	109-156대	570	
		7	109-165대	227	
		8	109-167대	225	
		9	109-164대	174	○ 공동개발 지정
			109-169대	140	
			소계	314	
		10	109-163대	182	○ 공동개발 지정
			109-170대	139	
			소계	321	
		11	109-99대	331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2	109-103답	331	
		13	109-100답	188	○ 공동개발지정
			109-151답	142	
			소계	330	
		14	109-152답	189	○ 공동개발지정
			109-220답	130	
			소계	319	
		15	109-153답	214	○ 공동개발지정
			109-221답	129	
			소계	343	
		16	109-166대	683	
		17	109-97답	1,455	
		18	109-69잡	9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9	109-70대	198	
		20	109-71대	120	
		21	109-72대	205	
		22	109-73대	600	○ 공동개발지정
			109-215대	398	
			111-26대	122	
			111-27대	78	
		소계		1,198	※ 필지수:4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위 치		면적(m ²)			
주1BL (계속)	(10,236)	23	111-29대	108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455대	10			
			소계	118			※ 필지수 : 2개
		24	111-28대	208	○ 공동개발 지정		
			111-32전	23			
			111-453대	10			
			111-459전	1			
			소계	242			※ 필지수 : 4개
		도로	111-14도	114	※ 비건축 부지		
			109-159답	2			
			109-160도	7			
			109-161도	7			
			109-162답	280			
			109-168도	62			
			111-467도	7			
			111-468도	10			
			111-477도	26			
			111-478도	3			
			소계	518			※ 필지수 : 10개
주2BL	5,031	1	109-19주	857			
		2	109-35대	457			
		3	109-94잡	742			
		4	109-232잡	131			
		5	109-37대	432			
		6	109-38대	146	○ 공동개발 지정		
			109-40대	1,557			
			109-182답	5			
			109-244대	18			
			소계	1,726		※ 필지수 : 4개	
		7	109-177답	364			
		8	109-42대	159	○ 공동개발 지정		
			109-181전	2			
			소계	161		※ 필지수 : 2개	
9	109-101답	161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번호	면적(m²)	위 치		면적(m²)			
주3BL	2,007	1	109-49대	110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2	109-50대	120			
		3	109-48대	108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4	109-140대	135	○ 공동개발 지정		
			109-246대	17			
			소계	152	※ 필지수 : 2개		
		5	109-51대	147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	109-53대	99			
		7	109-52대	272			
		8	109-56대	46	○ 공동개발 지정		
			110-1대	230			
			소계	276	※ 필지수 : 2개		
		9	109-54대	39	○ 공동개발 지정		
			111-96대	182			
			소계	221	※ 필지수 : 2개		
		10	109-57대	45	○ 공동개발 지정		
			109-58답	36			
			110-3대	165			
			110-5대	41			
			소계	287	※ 필지수 : 4개		
		11	109-55대	10	○ 공동개발 지정		
			111-97대	177			
			111-98대	28			
			소계	215	※ 필지수 : 3개		
주4BL	3,948	1	109-107답	25	○ 공동개발 지정		
			109-235대	326			
			109-172답	48			
			소계	399	※ 필지수 : 3개		
		2	109-144대	417	○ 공동개발 지정		
			109-180대	20			
			소계	437	※ 필지수 : 2개		
		3	109-145대	433			
		4	109-146대	547			
		5	109-142답	31	○ 공동개발 지정		
			109-146대	41			
			109-147대	644			
			소계	716	※ 필지수 : 3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번호	면적(m²)	위 치		면적(m²)				
주4BL (계속)	(3,948)	6	109-58답	29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 개발 권장		
			109-59답	271				
			소계	300			※ 필지수 : 2개	
		7	110-2대	314				
		8	111-101대	112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 개발 권장		
			111-102대	196				
			111-103대	23				
			111-3도	5				
			111-5도	1				
			소계	337			※ 필지수 : 5개	
		9	111-98대	72	○ 공동개발 지정			
			111-99대	258				
			111-100대	135				
			소계	465			※ 필지수 : 3개	
		주5BL	4,714	1	109-118대		104	○ 공동개발 지정
					109-135답	7		
					소계	111	※ 필지수 : 2개	
2	68-2대			126	○ 공동개발 지정			
	68-17대			110				
	68-18대			149				
	68-84전			1				
	109-36대			431				
	109-176대			739				
	소계			1,556		※ 필지수 : 6개		
3	68-81전			137	○ 공동개발 지정			
	68-82전			415				
	68-83전			670				
	소계			1,222		※ 필지수 : 3개		
4	66대			405				
5	66-44대			331				
6	68-23대			20	○ 공동개발 지정			
	68-78대			167				
	68-79대			1				
	소계			188		※ 필지수 : 3개		
7	68-74차			157	○ 공동개발 지정			
	68-75종			497				
	소계			654		※ 필지수 : 2개		
도로	68-19도			207	※ 비건축 부지			
	109-122도			40				
	소계			247		※ 필지수 : 2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주6BL	6,817	1	68-20종	2,380	○ 공동개발 지정
			109-39전	27	
			109-122도	24	
			109-125답	4	
			소계	2,435	※ 필지수 : 4개
		2	68-20종	46	○ 공동개발 지정
			68-38전	91	
			소계	137	※ 필지수 : 2개
		3	68-23대	60	○ 공동개발 지정
			68-80대	131	
			소계	191	※ 필지수 : 2개
		4	66-39대	379	
		5	68-24전	345	
		6	68-25전	198	
		7	68-39전	266	
		8	68-40전	317	
		9	68-26전	66	○ 공동개발 지정
			68-33전	250	
			68-37전	115	
			68-50도	4	
소계	435		※ 필지수 : 4개		
10	109-149대	751			
11	68-77대	1,214			
도로	68-19도	149	※ 비건축 부지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	25,998.9	-	25,998.9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 1BL	25,998.9	1	810대	25,998.9

다)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계	27,523	-		27,356	준주거지역		
준1BL	6,286	1	111-264대	203	-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7Lot ② 준1BL 8~9Lot ③ 준1BL 10~11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18Lot
		2	111-251대	237	-		
		3	111-245대	200	-		
		4	111-246대	201	-		
		5	111-247대	200	-		
		6	111-248대	201	○ 공동개발 지정		
			111-249대	209			
		계		410	※ 필지수 :2개		
		7	111-250대	210	-		
		8	111-8대	356	-		
		9	111-11대	171	○ 공동개발 지정		
			111-396대	76			
			계			247	
		10	111-154대	293	-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1BL 12~18Lot	
		11	111-259대	297	-		
		12	111-263대	456	-		
		13	111-261대	603	-		
		14	111-256대	580	-		
15	111-257대	478	-				
16	111-258대	454	-				
17	111-158대	273	-				
18	111-260대	588	※ 비건축부지				
준2BL	8,939	1	111-209대	22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2~3Lot ② 준2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	111-215대	241			
		3	111-192대	277			
		4	111-254대	203			
		5	111-295대	202			
		6	111-20대	877	○ 공동개발지정		
			66-18잡	161			
			소계			1,038	
		7	111-210대	206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8	111-220대	206			
		9	111-211대	206			
		10	111-221대	207			
		11	111-212대	206			
		12	111-222대	206			
		13	111-213대	252			
		14	111-216대	420			
		15	111-217대	427			
		16	111-225대	352			
		17	111-226대	352			
		18	111-227대	352			
		19	111-255대	458			
		20	111-230대	601			
		21	111-265대	428			
		22	111-229대	485			
		23	111-228대	544			
24	111-214도	405	※ 비건축 부지				
25	111-231도	436	※ 비건축 부지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3BL	2,920	1	111-152대	29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2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3Lot
		2	111-196대	1,407		
			112-1대	181		
			112-2도	63		
			소계	1,651		
		3	111-56대	2		
			111-161대	519		
			111-173도	225		
			111-174대	8		
			111-176대	223		
준4BL	3,498	1	111-300대	7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3Lot ② 준4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5Lot
			111-161대	24		
			111-173도	64		
			111-176대	1		
			111-179대	383		
			111-235대	155		
		2	소계	627		
			111-173도	130		
			111-176대	4		
			111-180대	343		
		3	111-235대	82		
			소계	559		
		4	111-56대	74		
			111-169대	183		
			111-170대	658		
			111-173도	83		
			111-176대	73		
		5	소계	1,071		
			111-57대	157		
			111-166대	9		
			111-171대	34		
			111-172대	105		
			111-174대	166		
준5BL	5,629	1	111-57대	26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소계	497		
		2	111-183대	1,718		
			111-301창	1,316		
			111-238대	2		
			소계	1,318		
			111-197대	13		
			111-239대	63		
		3	111-241대	28		
			111-242대	6		
			111-243대	63		
			111-301창	107		
			111-344창	1,427		
준6BL	251	1	소계	1,707		
			111-232대	415		
			111-244대	133		
			111-233대	110		
			111-236도	228		
			111-182대	249		
			111-330대	2		
준6BL	251	1	소계	251		
			소계	251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가 구(BLock)		획 지(Lot)			가 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상업 계	52,389	-	-	52,389	상업 계	52,447	-	-	52,447	일반상업지역			
상1BL	1,524	1	111-9대	24	상1BL	1,524	1	111-9대	24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22대	11				111-22대	11				
			111-23대	502				111-23대	502				
			111-31대	26				111-31대	26				
			111-137대	141				111-137대	141				
			111-406전	40				111-406전	40				
			111-435대	1				111-435대	1				
			111-437대	2				111-437대	2				
			111-439대	7				111-439대	7				
			111-457전	5				111-457전	5				
			소계	759				소계	759				
		※ 필지수 : 10개											
		2	111-24대	337	2	111-24대	337						
			3	111-36철	89	3	111-36철	89	○ 공동개발 지정				
		111-54전		308	111-54전		308						
		111-55대		31	111-55대		31						
		소계		428	소계		428						
		※ 필지수 : 3개	※ 획지수 : 3개										
		상2BL	9,141	1	66-1제	348	상2BL	9,141	1	66-1제	348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동 개발 권장 1-2LOT
					66-58제	5				66-58제	5		
111-38대	258				111-38대	258							
111-39대	22				111-39대	22							
111-40대	311				111-40대	311							
111-41대	278				111-41대	278							
111-42대	374				111-42대	374							
111-108도	5				111-108도	5							
111-111대	58				111-111대	58							
111-112대	53				111-112대	53							
111-113도	56				111-113도	56							
111-114대	188				111-114대	188							
111-115대	185				111-115대	185							
111-116대	112				111-116대	112							
111-117대	136				111-117대	136							
111-118대	136				111-118대	136							
111-119대	152				111-119대	152							
111-120대	46				111-120대	46							
111-121대	274				111-121대	274							
111-122대	238				111-122대	238							
111-441대	15				111-441대	15							
111-443대	14				111-443대	14							
66-59도	10				66-59도	10							
소계	3,274				소계	3,274							
※ 필지수 : 23개													

기 정				변 경				비 고			
가 구(BLock)		획 지(Lot)		가 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 번호	변경	위 치	면적 (㎡)				
상2BL (계속)	(9,141)	2	66-1제	278	상2BL (계속)	(9,141)	2	66-1제	278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43대	104				111-43대	104		
			111-44대	390				111-44대	390		
			111-45대	75				111-45대	75		
			111-123대	334				111-123대	334		
			111-124대	516				111-124대	516		
			111-125대	552				111-125대	552		
			111-126대	300				111-126대	300		
			111-127대	145				111-127대	145		
			111-202대	40				111-202대	40		
			111-203대	65				111-203대	65		
			111-204대	57				111-204대	57		
			111-205대	121				111-205대	121		
			111-322대	95				111-322대	95		
			소계	3,072				소계	3,072		
		3	66-5잡	2,794			3	66-5잡	2,794	○ 공동개발 지정	
			66-60잡	1				66-60잡	1		
			소계	2,795				소계	2,795		※ 필지수 : 2개
상3BL	18,385	1	66-41제	232	상3BL	18,385	1	66-41제	232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 동개발 권장
			111-47대	18				111-47대	18		
			111-48대	103				111-48대	103		
			111-49대	165				111-49대	165		
			111-50대	188				111-50대	188		
			111-51대	40				111-51대	40		
			111-52대	162				111-52대	162		
			111-129대	44				111-129대	44		
			111-130대	15				111-130대	15		
			111-131대	165				111-131대	165		
			111-132대	73				111-132대	73		
			111-133대	175				111-133대	175		
			111-135대	109				111-135대	109		
			111-201대	290				111-201대	290		
			111-319대	5				111-319대	5		
			111-325대	6				111-325대	6		
			111-326대	120				111-326대	120		
			소계	1,910				소계	1,910		
		2	66-41제	461			2	66-41제	461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45				111-7대	45		
			111-53대	327				111-53대	327		

기 정				변 경				비 고			
가 구(BLock)		획 지(Lot)		가 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상3BL (계속)	(18,385)	2 (계 속)	111-136대	99	상3BL (계속)	(18,385)	2 (계 속)	111-136대	99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계속)
			111-159대	61				111-159대	61		
			111-345대	105				111-345대	105		
			111-346대	47				111-346대	47		
			111-347대	101				111-347대	101		
			111-348도	46				111-348도	46		
			111-349대	189				111-349대	189		
			111-350대	417				111-350대	417		
			111-368대	150				111-368대	150		
			소계	2,048				소계	2,048		
		3	66-41제	335			3	66-41제	335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164				111-7대	164		
			111-160대	60				111-160대	60		
			111-354대	104				111-354대	104		
			111-355대	39				111-355대	39		
			111-356대	294				111-356대	294		
			111-357대	234				111-357대	234		
			111-362대	226				111-362대	226		
			111-363대	240				111-363대	240		
			111-364대	60				111-364대	60		
			111-365대	73				111-365대	73		
			111-366대	61				111-366대	61		
		111-367대	83	111-367대			83				
		111-369도	130	111-369도			130	* 필지수 : 14개			
		소계	2,103	소계			2,103				
		4	111-149대	61			4	111-149대	61	○ 공동개발 지정	
			111-302대	5				111-302대	5		
			111-358대	784				111-358대	784		
			111-393대	62				111-393대	62		
			소계	912				소계	912		
		5	66-19도	15			5	66-19도	15	○ 공동개발 지정	
			111-149대	15				111-149대	15		
			111-303대	295				111-303대	295		
			111-359대	319				111-359대	319		
			111-393대	2				111-393대	2		
			소계	646				소계	646		
		6	66-41제	398			6	66-41제	398	○ 공동개발 지정	
			111-360대	123				111-360대	123		
			111-361대	276				111-361대	276		
			111-475대	226				111-475대	226		
			111-476대	85				111-476대	85		
			소계	1,108				소계	1,108		
		7	66-24잡	9,658			7	66-24잡	9,658		

기 정				변 경				비 고							
가구(Block)		획 지(Lot)		가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상4BL	6,739	1	111-11대	1,108	상4BL	6,797	1	111-11대	3,945	○ 인접 획지 간 공 동 개 발 권장					
			111-299대	181											
			111-311대	47											
			111-396대	1,218											
			111-397대	1,333											
			소계	3,887											
		2	111-151대	1,113			2	111-151대	1,113	○ 공동개발 지정					
			111-155대	1,739				111-155대	1,739						
			소계	2,852				소계	2,852			※ 필지수 : 2개	※획지수:2개		
상5BL	5,833	1	111-143대	2,745	상5BL	5,833	1	111-143대	2,745	○ 공동개발 지정 - 상5BL+상6BL ※ 전체 공동개발 시에만 가능					
			111-152대	264				111-152대	264						
			소계	3,009				소계	3,009			※ 필지수 : 2개			
		2	111-147대	1,048			2	111-147대	1,048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2-2도	3				112-2도	3						
			112-3대	515				112-3대	515						
			소계	1,566				소계	1,566			※ 필지수 : 3개			
		3	111-73대	7			3	111-73대	7	○ 공동개발 지정					
			111-74대	17				111-74대	17						
			111-144대	572				111-144대	572						
			111-145대	580				111-145대	580						
			111-269대	25				111-269대	25						
			111-270대	57				111-270대	57						
			소계	1,258				소계	1,258			※ 필지수 : 6	※획지수:3개		
			상6BL	2,519				1	111-71대			127	상6BL	2,519	1
		111-72대					35		111-72대	35					
111-74대	25	111-74대			25										
111-75대	99	111-75대			99										
111-76대	278	111-76대			278										
111-77대	111	111-77대			111										
111-146대	257	111-146대			257										
소계	932	소계			932	※ 필지수 : 7개									
2	111-37대	80			2	111-37대	80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71대	218				111-71대	218								
	111-72대	237				111-72대	237								
	111-146대	273				111-146대	273								
	소계	808				소계	808			※ 필지수 : 4개					
3	111-37대	473			3	111-37대	473	○ 공동개발 지정							
	111-61대	97				111-61대	97								
	111-62대	63				111-62대	63								
	111-72대	26				111-72대	26								
	111-146대	37				111-146대	37								
	111-166대	83				111-166대	83								
	소계	779				소계	779			※ 필지수 : 6개	※ 획지수 : 3개				

주) 상5BL·상6BL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 내 공지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함

주1. 금회 변경은 상4BL 가구 및 획지의 내용 변경사항은 없으며, 도면상 획지선 변경만 있음

주2. 해당 기정/변경 조서는 기 고시된 내용의 오류 정정 사항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구(Block)		획 지(Lot)		가 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상7BL	8,936	1	111-89대	61	상7BL	8,286	1	111-89대	61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90대	73				111-90대	73		
			111-91대	69				111-91대	69		
			111-423도	114				111-423도	114		
			소계	317				소계	317		
		2	111-92대	79			2	111-92대	79	○ 공동개발 지정	
			111-93대	56				111-93대	56		
			111-423도	95				111-423도	95		
			소계	230				소계	230		
		3	111-94대	112			3	111-94대	112	○ 공동개발 지정	
			111-423도	103				111-423도	103		
			소계	215				소계	215		
		4	111-58대	5			4	111-58대	5		
			111-59대	227				111-59대	227		
			111-63대	31				111-63대	31		
			111-64대	106				111-64대	106		
			111-65대	69				111-65대	69		
			111-66대	340				111-66대	340		
			111-67대	370				111-67대	370		
			111-68대	364				111-68대	364		

기 정				변 경				비 고			
가 구(BLock)		획 지(Lot)		가 구(BLock)		획 지(Lot)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가구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상7BL	8,223	4	111-69대	317	상7BL	8,223	111-69대	317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11-70대	226			111-70대	226			
			111-79대	142			111-79대	142			
			111-80대	281			111-80대	281			
			111-81대	267			111-81대	267			
			111-82대	215			111-82대	215			
			111-83창	268			111-83창	268			
			111-84대	274			111-84대	274			
			111-85대	112			111-85대	112			
			111-86대	225			111-86대	225			
			111-138대	33			111-138대	33			
			111-139대	34			111-139대	34			
			111-140대	90			111-140대	90			
			111-141대	106			111-141대	106			
			111-142대	315			111-142대	315			
			111-148대	255			111-148대	255			
			111-167대	20			111-167대	20			
			111-194도	108			111-194도	108			
			111-374대	60			111-374대	60			
			111-398대	225			111-398대	225			
			소계	5,085			소계	5,085	※ 필지수: 28개		
		5	111-162대	858			5	111-162대	858	○ 공동개발 지정	
			111-164대	456				111-164대	456		
			111-253대	185				111-253대	185		
			111-431대	902				111-431대	902		
			소계	2,558				소계	2,401	※ 필지수: 4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허용용도(A)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1	주 1~6BL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A2	공동 1BL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A3	준 1~2BL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 준 1BL (1~11Lot) - 준 2BL (1~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A3	준 1~2BL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 준 1BL (1~11Lot) - 준 2BL (2~6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 준 1~2BL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주거복합건축물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4	준 3~5BL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BL (1Lot) 준 5BL (4~5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 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 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A4	준 3~5BL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BL (1~2Lot) 준 4BL 준 5BL (2~4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 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3~5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 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중 창고 ○ 운동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A5	준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 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중 상점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A6	상 1BL, 상 4~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시설
A7	상 2~3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시설
A8	상 7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주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주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주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주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주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주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주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장용도(B)

○ 권장용도 지정을 통하여 구역특성 반영 적극 유도

도면번호	위 치	권장용도(B)
B1	주 1BL	○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B2	주 2BL~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3) 불허용도(C)

○ 도시형생활주택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도면번호	위 치	불허용도(C)
C1	전 체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고
건폐율(%)	60%이하	50%이하	60%이하	80%이하	

주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80% 적용.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0% 적용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2) 용적률

○ 개발 규모와 연계한 용적률 계획 수립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반시설 의무 부담비율(순부담)	비 고
주 1BL~6BL		200%	230%	250%	-	
공동 1BL		180%	200%	250%	43.1%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1~6Lot) 준 3BL(1Lot) 준 5BL(4~5Lot)	200%	240%	-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170%	200%	-	-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300%	350%	400%	-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5BL(2~4Lot)	300%	350%	400%	5% 이상	
	준 3BL(1~2Lot) 준 4BL	300%	350%	400%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200%	240%	300%	10% 이상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5BL	300%	400%	500%	12% 이상	
	준 3.4BL	300%	400%	500%	-	
준 6BL		200%	240%	-	-	
상 1BL		200%	230%	250%	-	
상 2BL	1종일반주거→일반상업	200%	230%	250%	-	기준용적률 은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 여 산정
	일반상업	700%	800%	1000%	-	
상 3~6BL		700%	800%	1000%	-	
상 7BL		350%	420%	500%	7.5% 이상 (개설 부담)	

주1) 준1.2BL을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음(적용 용적률 : 기준 200%, 허용 240%, 상한 300%)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반시설의무부담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3-5-3 규정 적용(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상2BL.상3BL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적률(%)	비 고
~10% 미만	1,000%	
10%이상~20%미만	950%	
20%이상~30%미만	900%	
30%이상~40%미만	850%	
40%이상~50%미만	800%	
50%이상~60%미만	750%	
60%이상~70%미만	700%	
70%이상~80%미만	510%	

- 준주거지역 (준1BL.준2BL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적률(%)	비 고
~10% 미만	500%	
10%이상~20%미만	480%	
20%이상~30%미만	460%	
30%이상~40%미만	440%	
40%이상~50%미만	420%	
50%이상~60%미만	400%	
60%이상~70%미만	380%	
70%이상~80%미만	330%	
80%이상~90%미만	300%	

- 인센티브 계획

구 분	완화 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 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친환경 건축물	옥상조경(권장)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3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 ÷대지면적×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권장)	기준용적률×0.03	위치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 (규제)	기준용적률×0.03	

주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주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 공동 1BL은 기반시설의무부담비율 준수 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기 산정식을 적용하지 않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주 1BL~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공동 1BL		5	-	
개발유형 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BL 준 3BL(1Lot) 준 5BL(4~5Lot)	-	4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	10	
개발유형 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3BL(1~2Lot) 준 4BL 준 5BL(2~4Lot)	-	10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외 기타용도	-	10
개발유형 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참고)	준 1~2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준 3~5BL	-	-	10
준 6BL		-	-	4
상 1BL		-	3	6
상 2BL~3BL	주거복합, 업무시설	5	-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4BL~6BL	업무시설	5	-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7BL	특별계획구역	-	13m 이하 (100m 이하) 19m 이하 (200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 (장도포 대지)경 계

주1)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라)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구 분	적 용 지 역	적용기준	비 고
건 축 한 계 선	대로1-20호선 변	1m	○ 전면공지로 조성 ○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2-74호선 변	2~3m	
	대로3-76호선 변	2m	
	중로1-90호선	2m	
	중로1-302호선 변	1~5m	
	중로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3-2호선 변	2m	
	소로(소래)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2-9, 2-10호선 변	2m	
	소로3-10호선 변(신설)	1m	

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주2)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구 분			내 용
저 층 부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 로 처리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출입구 높이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높이 와의 차이는 10cm 이하
옥 상 부			○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불허
공동주택 및 주거 복합용도 건축물			○ 탑상형 ○ 획일적 패턴 지양 및 형태 및 입면상 변화로 조형성 향상

○ 건축물의 외관

구 분	내 용
재 료 및 색 채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 사용
야 간 조 명	○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물외벽 및 조형물, 보도바닥 등에 조명을 투시하는 야간환경조명 설치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대지 내 공지

구 분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 개선 - 대로 1-20호선 변 : 1m - 대로 2-74호선 변 : 2~3m - 대로 3-76호선 변 : 2m - 중로 1-90호선 : 2m - 중로 1-302호선 변 : 1~5m - 중로 2-58, 2-110호선 변 : 2m - 중로(소래) 3-2호선 변 : 2m - 소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 2m - 소로 2-9, 2-10호선 변 : 2m - 소로 3-10호선 변 : 1m (신설)	○ 건축한계선 부분
공개 공지	쌈지형 공지	○ 일반상업용지(상2-1, 상2-2, 상3-1, 상7) : 4개소 ○ 준주거용지(준4-3) : 1개소	○ 위치지정
대 지 안 조 경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용지 : 폭 10~15m (완충녹지)	

주1)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차가 없어야 함
주2) 공지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의 설치를 금함
주3) 대지내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시행

나) 교통처리계획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흐름 저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 대로 1-20호선 변 ○ 대로 2-74호선 변 ○ 대로 3-76호선 변 ○ 중로 1-90호선 변 ○ 중로 1-302호선 변
공공보행통로	○ 준주거용지(준4-3,4) : 1개소 ○ 상업시설용지(상7) : 2개소	○ 위치지정

주1) 간선가도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주2)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도면을 따름

다) 옥외광고물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해당구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될 예정으로 향후, 고시 사항에 따라 특정광고물 설치기준을 준수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임.

경미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②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③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 가능.